

碩士學位論文

韓 · 中 貿易紛爭 事例와 解決方案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金 海 英

2009年 2月

韓·中 貿易紛爭 事例와 解決方案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熙哲

金海英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2月

金海英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李元錫 

委員

黃正奉 

委員

金熙哲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9年 2月

A Study on Trade disputes Case and Settl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i-ying jin
(Supervised by professor Hee-Cheol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09.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Won-Soek Moon, Prof. of International Trade

Jung-Bong Hwang

Hee-Cheol Kim

Hee cheol Kim

2009. 2.

Dat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 1 장 서론.....	1
I. 연구의 목적.....	1
II.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 2 장 한·중 무역현황과 무역분쟁 유형 및 요인.....	3
I. 한국 무역에서 중국의 위상변화.....	5
II. 중국 무역에서 한국의 위상변화.....	6
III.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6
IV. 한·중 경쟁력 분석.....	9
V. 한·중 무역분쟁의 유형.....	10
1. 고의적인 통관지연.....	11
2. 고의적인 대금결제지연.....	11
3. 클레임.....	11
VI. 한·중 무역 분쟁의 요인.....	12
1. 중국의 대외 무역제도.....	12
2. 한국의 일부 대외 무역제도.....	18
3. 한·중 무역에 존재하는문제.....	23
4. 한·중 무역분쟁의 요인 분석.....	26
제 3 장 한·중 무역분쟁의 사례.....	32
I. 한·중 반덤핑 현황.....	32
1. 산업간 무역 분쟁 및 양국 반덤핑 규제현황.....	32
II. 한·중 반덤핑 사례 현황.....	36
1. 제지산업.....	37
2. 석유화학산업.....	39

3. 철강업.....	44
4. IT업.....	46
5. 기타.....	47
III. 한·중 농산물 교역과 무역 분쟁 사례.....	48
1. 한·중 농산물 무역 분쟁.....	48
2. 한·중 농산물 교역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54
IV. 한·중 지적 소유권 분쟁 사례.....	56
V. 한·중 신용장 분쟁 사례.....	57
제 4 장 한·중 무역 분쟁 해결 방안과 발전 방향.....	61
I. 분쟁의 예방.....	61
1. 한국의 차원.....	61
2. 중국의 차원.....	63
II. 분쟁의 해결.....	64
1. 무역장벽의 철폐.....	64
2. WTO를 통한 무역 분쟁 해결.....	65
3. 수출지도와 출혈수출 방지.....	66
4. 무역협력채제 강화.....	67
5. 능동적인문제해결능력 확보와 마케팅 전개.....	67
6. 감정적인 인식 개선.....	67
III. 한·중 무역의 발전 방향.....	68
제 5 장 결 론.....	74
[참고문헌].....	76
중문초록.....	80
한글초록.....	82
영문초록.....	84

<표 목 차>

<표2-1> 한·중 간 무역확대 추이.....	4
<표2-2> 한국 무역에서 중국의 위상.....	5
<표2-3> 중국 무역에서 한국의 위상.....	6
<표2-4> 주요 대중국 수출상품.....	7
<표2-5> 주요 대중국 수입상품.....	9
<표2-6> 주요 시장에서 한·중 시장 점유율 비교.....	10
<표2-7> WTO가입후 (2010년 까지)중국의 관세율 인하.....	18
<표2-8> 비제도적 애로요인의 비중.....	28
<표2-9> 한국 업체들의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도.....	29
<표3-1> 중국의 수입규제 대상국.....	33
<표3-2> 한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했던 8가지 품목.....	36
<표3-3> 한국의 PVC 수출현황.....	43
<표3-4> 마늘파동 당시 중국산 마늘 수입현황.....	50
<표3-5> 마늘파동 당시 한국 국내산 마늘 가격 추이.....	50
<표3-6> 마늘파동당시 한국산 마늘 생산 및 중국산 마늘 수입추이.....	50
<표3-7> 마늘파동 당시 긴급관세부과 최종결정 내용.....	51
<표3-8> 중국산 수산물 품목별 부적합 현황.....	53

제1장 서론

I.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 간의 무역 추세를 정리하여 두 나라 간에 발생했던 무역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 최종적으로 양국 간 무역 분쟁을 줄이고자 하는 기대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래 한국이 1972년 무역거래법을 개정할 때까지 단절되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1978년부터 양국 간 본격적인 교역이 시작되었고, 그 후 대외무역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한국을 위협하는 무역대국이 되었다. 즉, 한국과 인접해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파트너이자 무역경쟁국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1992년 한·중 간의 공식수교를 기점으로 하여 교역의 성장속도는 가속화되어 중국이 WTO 가입 이후 2002년까지 한국은 중국의 최대투자 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지속적인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교역현황은 한국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었지만, 그 이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은 교역 이래 서로 다른 경제시스템과 짧은 무역거래경험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겪어 왔다. 그 중에서도 자국민 우대와 사회주의적 제도와 자본주의적 제도간의 장애와 함께 문화적 차이 의한 피해를 당하는 많은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제도와 관습 또는 문화를 정확하게 파악해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간 무역 분쟁의 해결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분쟁이 나타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은 상호간의 이해와 예방

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무역 분쟁에 대한 여러 예방 방안을 논술함과 동시에 과거 몇 년간의 한·중무역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무역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한·중 무역의 현황 및 추세에 따르는 한·중간의 무역 분쟁의 분석과 해결에 한정한다. 분석 대상 기간은 한·중 수교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로 한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 측의 한국무역협회, 국회전자도서관, 국회중앙도서관, 각 대학교도서관, 각 기관이 발간하는 정기 통계자료, 한국세관, www.kita.net, www.naver.com, www.daum.net, www.google 등과 중국 측의 중국무역협회, 중국세관, 중국 吉林省吉林農業大學圖書館, 吉林省吉林大學圖書館, www.baidu.com, www.sina.com, www.yahoo.com, www.cnarb.com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이론전개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사례의 분석과 예방, 해결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 한·중 무역 현황과 전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황에 대한 고찰에 따라 한·중 무역 구조분석, 전개, 무역 분쟁의 발생요인의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제3장에서는 양국의 대외무역제도의 비교에 따라 한·중 무역 분쟁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4장에서는 무역 분쟁의 예방과 무역 분쟁 발생시 대책방안을 서술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제2장 한·중 무역 현황과 무역 분쟁 유형 및 요인

1950년 이후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전쟁의 교전 당사국으로서 관계를 유지하였다. 1960년대까지의 한·중 관계는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서만 연결되는 일시적인 접촉이었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비공식 또는 비공개적인 양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전개되었으며, 인적 교류, 경제적 교류, 문화적 교류 등이 제한된 분야에서 폭넓게 지속되었고, 경제적 교류는 1970년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양국 간의 관계는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한·중 교류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의 참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고 중국거주 한국 교포들의 한국방문이 확대되는 등 인적 교류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교류의 확대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게 된다. 중국은 간접교역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던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공개적으로 이를 인정하였으며 한국과의 경제교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양국 간의 경제교류는 “문은 닫혀있지만 빗장은 걸려있지 않은(關門不上鎖)” 상황으로 더 한층 직접적인 양상으로 확대되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정식으로 국교를 맺은 후 쌍무무역의 발전의 가속에 따라 무역액이 국교를 맺기 전의 50억 달러에서 2002년에는 440.7억 달러로 증가하여 쌍무무역 규모가 8배나 증가했다.¹⁾ 2002년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첫째 해이다. 중국은 관세를 WTO 가입 당시 약속대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한국 상품을 중국시장에 들여오는데 유리하게 하였다. 2003년까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 증폭은 29.4%에 달했고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역시 51% 증가하였다. 2004년 한·중 무역 총액은 900.7억 달러로서 2003년에 비하여 42.5%의 증가를 보였다.²⁾ 중국세관의 조사에 따라 1992년-2004년까지 한·중 무역이 년30.8%로 증가했고, 양국 무역상품이 의류 등 방제품이 컴퓨터 등 IT제품으로 무역거래를 하였

1) <<中韩双边贸易 存在问题及其对策>> <http://www.baidu.com> 2005.10.18

2) 김진, 한·중 무역관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P.10

다.³⁾ 2005년 한국은 중국이 완전 시장경제지위를 인정에 따라 양국기업 무역거래의 환경이 더욱 공평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胡錦濤)가 한국 방문할 때 양국정부 발표한<<중·한 공동성명>>(中韓聯合公報)에서 “2010년 양국공식 수교 20주년 때 양국 무역액은 곧 2000억 달러를 초과 할 것이다.”고 예측 했다.⁴⁾ 2006년 한·중 수출입 총액은 1,343.1억 달러로 증가 했다. 그 중에서 중국수출은 455.3억 달러, 수입은 897.8억 달러이다. 한국기업이 대중국 직접투자는3,894항목이고 31.6억 달러로 달성했다.⁵⁾ 한국 관세청의 조사에 따라 2007년 한·중수출입 총액은 1,599억 달러, 동기대비 19.1%로 증가했고 2008년 상반기 한·중무역은

<표2-1> 한·중간 무역 확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중국통계 기준			한국통계 기준		
	중대한	한대중	무역수지	한대중	중대한	무역수지
1990	433	236	196	585	2,268	-1,683
1991	2,179	1,066	1,113	1,003	3,441	-2,438
1992	2,438	2,623	-185	2,654	3,725	-1,071
1993	2,860	5,360	-2,500	5,151	3,929	1222
1994	4,367	7,318	-2,942	6,203	5,463	740
1995	6,688	10,288	-3,600	9,144	7,401	1,742
1996	7,527	12,485	-4,957	11,377	8,539	2,839
1997	9,136	14,885	-5,749	13,572	10,117	3,456
1998	6,266	15,021	-8,755	11,944	6,484	5,460
1999	7,808	17,228	-9,420	13,685	8,867	4,818
2000	11,293	23,208	-11,915	18,455	12,799	5,656
2001	12,544	23,396	-10,851	18,190	13,303	4,888
2002	15,508	28,581	-13,073	23,754	17,400	6,354
2003	20,096	43,135	-23,038	35,110	21,909	13,201
2004	27,818	62,250	-34,431	49,763	29,585	20,178
2005	35,117	76,874	-41,757	61,915	38,648	23,267
2006	44,530	89,780	-45,250	69,459	48,557	20,903
2007	52,640	94,560	-41,920	81,985	63,028	18,957
2008.1-10	67,850	80,309	-12,458	81,472	67,321	14,150

자료: www.kita.net, www.baidu.com 2008.11

³⁾ 人民网 世界财经 2005.11.24

⁴⁾ 人民网 <<중·한 공동성명>>(中韓聯合公報) 2005

⁵⁾ 商务部 <http://finance.sina.com.cn/g/200700116/11593250748.shtml> 2007.1.16

871.98억 달러, 동기대비 28.5%를 증가 했다.⁶⁾

<표2-1>를 보면 한·중무역의 발전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쌍무무역이 동일한 한국 대외무역을 보면 년 평균량이 7%로 증가하고 있고 동일한 중국 대외무역 또한 년 평균량이 13.3%가 증가할 정도로 변화해왔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어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이르면 3,4년 안에 적자로 돌아 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한국의 무역수지는 “장기 적자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 진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산업연구원(KIET) 등 경제연구기관과 KOTRA 무역관 등은 대중 교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각변동”의 성격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KIEP베이징 대표처가 작성한 중국 대외무역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보고서는 “대중 수출을 주도해 온 부품과 소재 분야의 수출증가율이 둔화돼 무역적자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⁷⁾

I. 한국 무역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표2-2> 한국 무역에서 중국의 위상

단위: 억 달러

연도	총 교역	수출	수입
1992	64	27	37
2005	1,006	619	386
2007	1,506	954	561
2008(1-10)	1,481	803	678

자료: www.kita.net 2008.11

표<2-2>를 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992년 27억 달러에서 2008(1-10)년 803억 달러로 연 평균 26%씩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 대 중

⁶⁾ 环商数据 <http://www.worldbgdate.com> 2008.8.5

⁷⁾ 新浪 财经纵横 国内财经 2007.1.16

국 수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1992년(중국 비중:3.5%) 6위에서 2005년(중국 비중:21.8%) 1위로 상승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 수입도 9.3%씩 증가에 따라 일본(1위)에 뒤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II. 중국 무역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

<표2-3>중국 무역에서 한국의 위상

단위: 억 달러

연도	총 교역	수출	수입
1992	50.6	24	26
2005	1,120	351	769
2007	1,345	526	819
2008(1-10)	1,497	673	814

자료: www.kita.net 2008.11

중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1992년(한국 비중:2.9%) 24달러에서 2007년(한국 비중: 4.7%) 526억 달러로 연 평균 22.8%씩 증가하고 수입액은 1992년(한국 비중: 3.3%) 26억 달러에서 2008(1-10)년(한국 비중: 11.6%)에는 814억 달러로 연 평균 29.7%씩 증가에 따라 중국의 대한국 총 교역액은 1992년부터 2008(1-10)년까지 25%씩 증가했다.

III.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한국이 대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품목별로 보면 세계시장을 향한 중국의 가전제품, 통신기기의 생산 기지화 및 내수확대로 인해 핸드폰, 컴퓨터, 반도체 등 IT관련 제품과 승용차 등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어, 수출 상품 구조가 고도화 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대한국 주요 수출 제품은 천연섬유류, 농수산물, 광물성 생산물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표2-4> 주요 대중국 수출 상품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05		2006		2007		2008(1-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7,114	117.0	8,578	9.0	9,261	13.6	7,879	3.3
2	석유제품	3,254	23.0	5,014	151.0	5,209	3.9	7,998	98.3
3	컴퓨터	5,072	-5.1	5,090	-9.2	5,928	25.2	3,814	-22.8
4	합성수지	3,670	19.8	4,396	4.2	4,563	15.2	4,775	28
5	무선통신기기	3,708	5.8	4,374	9.2	5,684	34	5,755	23.2
6	자동차부품	2,693	55.1	3,366	28.2	2,287	-14.1	1,740	-7.4
7	석유화학합성원료	2,470	36.3	3,360	32.2	2,957	3.4	2,996	22.5
8	철강판	3,413	11.0	3,164	-30.0	2,436	-8.7	2,679	33.1
9	광학기기	3,820	113.3	3,030	-21.0	3,627	51.6	4,543	61
10	평판디스플레이·센서	796	90.1	2,348	350.0	5,867	109.7	6,064	33
11	석유화학중간원료	1,588	15.4	1,974	9.4	2,826	32.5	2,648	13.9
12	동제품	1,007	35.6	1,742	100.0	2,035	12.9	1,736	0.2
13	기구부품	737	45.7	1,084	85.6	1,194	16.4	1,349	4.1
14	음향기기	758	13.1	752	-23.2	611	-4.5	605	16.9
15	플라스틱제품	833	29.0	1,040	28.0	1,130	19.1	1,080	17.2
16	자동차	620	38.6	694	46.3	817	36.5	801	25.6
17	기초유분	794	18.3	1,018	-2.8	1,964	91	1,730	6.8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www.kita.net 2008.11

최근 들어 한국대중국 수출에서 효자품목이던 컴퓨터(부품과 완성품)가 2008년 처음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 자동차 부품도 2007년 3억 달러 흑자에서 올해 적자로 돌아설 공산이 크다.

중국은 2003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제2위 가전 수출국, 2005년부터 제1위 가진 수입국으로 등장했다. 한국가전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0년 88억 달러에서 2006년 90억 달러로 산업에 무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품수출, 완제품 수입이라는 보완적인 구조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한국 가전산업은 매년 100억 달러 안팎의 무역흑자를 지속하면서 전세계 무역특화지수도 0.5%이상으로 수출이 우위에 있다.

KIEP베이징 대표처 양평섭 박사는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완성품이나 소비재 등으로 무역 흑자를 내기 어려운 데다 부품소재나 중간재마저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무역뿐 아니라 한중 간 경제관계에도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 한다”고 진단했다. 대중국 흑자규모가 2006년에 5년 만에 줄어들었고, 2008년에도 감소세를 이어가는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⁸⁾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1992년 한중수교 첫해에 중국에서의 수입 중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했으나 2000년 16.6%, 2007년에는 21.5%로 매년 늘고 있다. 기계류 등 자본재 수입 비중도 1992년 2.65%에서 2007년에는 18.7%로 높아졌다.

철강도 철근 수입이 늘어 2005년 적자로 돌아선 후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 2005년 한 해 5억3000만 달러 적자였으나 2008년은 4월까지만 33억5100만 달러여서 연말이면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도 간단한 소모품과 부품은 2006년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 완성품을 포함한 전체 컴퓨터 무역수지도 2008년 4월까지 1억2700만 달러 적자를 보여 8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KIET 베이징대표처의 조철 박사는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311억 달러로 수입보다 2배가량 많았다”며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⁹⁾

이 같은 현상은 2006년 하반기 이후 중국 정부가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중간재나 부품소재 국산화를 적극 추진해 온 것과도 관련이 깊다.

현재 중국은 반도체와 대형 액정표시장치(LCD)패널, 합성수지 등 일부를 제외하면 가전 전기 음향 컴퓨터부품,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까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은 부품소재 분야에서 기술이 앞선 일본에서 적자를 보는 대신 중국에선 흑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의 한중 흑자에서 한일

8)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은행 2008.11.21

http://www.bok.or.kr/down.search?file_path=/attach/kor/537/2008/11/1227149038685.hwp&file_name=josa200829_hwp

9) 동아일보경제 2008.6.7

<표2-5> 주요 대중국 수입 상품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05		2006		2007		2008(1-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컴퓨터	3,324	42.1	4,804	57.2	4,850	15.4	4,254	7.8
2	반도체	1,902	36.7	3,190	80.6	4,211	36.2	5,134	53.1
3	의류	2,188	4.5	2,700	50	3,284	15.6	2,719	-2
4	철 강판	1,982	106.3	2,562	-20.6	4,436	70.4	8,420	136.7
5	형강	118	162.5	484	423.2	609	40.9	875	64.9
6	석탄	1,529	-1.8	1,480	-38.2	1,615	28.1	2,317	80.9
7	알루미늄	1,097	17.1	1,468	17.6	1,668	29	1,516	9.4
8	무선통신기기	826	47.7	1,422	90.6	1,817	31.1	1,925	33.4
9	정밀화학원료	1,012	35.3	1,306	28.4	1,500	28.7	1,800	48.4
10	선재봉강 및 철근	824	53.2	1,236	26.4	1,632	52.5	2,289	67.1
11	정전기기	921	32.7	1,224	49.4	1,409	23.1	1,151	-0.3
12	전선	743	45.5	1,120	60.7	1,344	25.4	1,150	4.6
13	기구부품	655	53.5	1,096	70.6	1,248	22.2	1,283	28.9
14	평판디스플레이·센서	534	18.7	676	48.8	2,555	285.2	2,984	48
15	기타비금속광물	550	17.7	692	36.0	867	30.6	950	36.8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www.kita.net 2008.11

간 적자를 낸 '3각 수지' 흑자 폭은 2005년 19억4100만 달러에서 2006년 42억1600만 달러까지 늘어났다가 2007년 3억580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2008년 1~4월에는 20억73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IV. 한·중 경쟁력 분석

한·중간 무역 경쟁력은 주요 시장 특히 미국 및 일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무역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서의 시장점유율은, 다른 지표(RCA 등)에 비해 단순하지만, 경쟁력 상위국

가의 점유율 정도 즉, 세계시장의 국별 독점정도,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가능성, 추월 가능성 등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표 2-6> 주요 시장에서 한·중 시장 점유율 비교

단위: 억 달러, 100억엔, 억 유로화, %

	미국				일본				EU			
	1995	2000	2007	2008 1-10	1995	2000	2007	2008 1-10	1995	2000	2007	2008 1-10
대한수입	24	40	45	39	162	220	321	261	14	19	38	25
대중수입	45	100	232	212	338	594	150	125	32	48	229	153

자료: www.kita.net 중국무역, 한국무역, 일본무역, 미국무역, EU무역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확대하였는데, 1995년 대비 2008(1-10)년 한국의 미국, 일본 및 EU 시장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거나,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중국의 동 점유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5년간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41%, 일본 시장에서 34%, EU시장에서 61%를 증가했다. 이들 3개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한국의 2배를 초과했다.

V. 한·중 무역분쟁의 유형

한·중 무역분쟁은 대부분 수입국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과대 관세부과를 하는 경우가 한 예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무역분쟁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유형이 나타난다.

1. 고의적인 통관지연

대금 지불 전에 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경우, 바이어가 고의로 통관을 지연시키면서 물품의 인수거절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현지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마켓 클레임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이다. 이는 실제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발생할 수도 있지만 물품가격을 할인받기 위해 고의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ship back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이어의 가격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고의적인 대금결제 지연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금결제를 지연시키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무역 분쟁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대금결제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변호사 등을 동원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다.

3. 클레임

물품에 대한 클레임의 경우는 발생초기에 신속히 확인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한국 업체의 경우 몇 년 동안 거래를 하였음에도 바이어와 전혀 만나보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발생 소지도 높고 발생 시 해결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급적 첫 거래 전에 바이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바이어 회사의 규모, 상태, 바이어 특성을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기적으로 만나 관리하는 것이 생각지도 못한 클레임을 예방하는 방법이다.¹⁰⁾

¹⁰⁾ <http://blog.naver.com/ankey?redirect=log&logNO=47469958>

VI. 한·중 무역 분쟁 요인

1. 중국의 대외 무역제도

중국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가입이 승인되며, 중국의 국제정치, 경제적 위상제고와 최고의 대우를 획득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이 취해온 각종 무역장벽과 문제점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하는 과제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 및 무역정책은 WTO 가입과 더불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1) 중국 대외무역법의 목적, 성격 및 특성

중국 대외 무역법은 “대외개방의 확대, 대외무역의 발전, 대외무역 질서의 유지, 대외무역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전한 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¹¹⁾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대외무역법은 중국 대외경제, 무역법제 개편의 이정표이자 대외 무역 관리체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서 대외무역의 중대 방침과 정책을 법의 형식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중국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서 원칙적인 조항만을 두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제정한 조례로서 규제하는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섬외경제법령의 제정·개정 시에는 이 법률을 법원(法源)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중국 화물무역관리조례”, “기술무역관리조례”, “화물수입허가증관리판법”,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조례”등이 있는데, 이 규범들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전부 개정되었다. 또한 산업피해 규제제도와 관련된 조례를 전면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2004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관세와 관련하여서는 “해관법”과 “수출입관세조례”등이 있다. 또한 중국이 WTO 및 기타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에서 이 법률은 중국의 가입자격을 심사하는 주요 기준이 되었

11) 중국 대외무역법, 제1조

다.

현재까지 중국은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무역경영자 관리, 수출입상품과 기술관리, 외환, 세관, 수출입상품의 검사와 식품검역,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대외경제무역 중재와 소송분야에 관한 무역법률 체계를 기본적으로 체계화하였다.

2)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한 제한 완화

2004년 4월 6일 중국은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것은 경제글로벌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새로운 배경아래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정한 중요한 법률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국민(개인)도 수출입업무를 영위하는 무역업자가 될 수 있다. 이 대외무역법 개정 전에는 개인이 대외무역경영자가 될 수 없으나, 이번기회를 통해 개인의 대외무역의 참가력이 크게 늘어났다.

둘째, 예전에는 전략비축물자는 국가만 수출입을 할 수 있지만 대외무역법을 개정 후에는 일부분의 일반무역업체가 수입허가를 받은 후에 이런 제품의 수출입 교역을 증대시키다.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의 신설로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입 금지와 기존 수입품에 대해서도 시장 질서를 위협할 경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¹²⁾ 그렇지만 이 제도를 실행할 때에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본다.

3) 무역구제 조치

중국은 2002년 1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대외무역구제조치 관련 법률인 보장조치 조례와 반덤핑 조례 등을 제정하였다. 이들 법령은 외국 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할 구체적 내용이 결려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외무역 구제조치 관련 법률을

¹²⁾ 정운수, 한-중 무역 분쟁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12, P.6

대외개방 확대와 정책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개정하여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1) 보호주의 색채가 강해진 세이프가드(보장조치) 조례

보장조치 조례 개정안은 총 5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¹³⁾

첫째, 과거에는 예비 판정 후에 최종결정을 내려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으나, 개정 후에는 예비판정을 생략하고 바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즉 과거에는 수입제품의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예비판정을 내리고, 다시 일정기간의 추가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시까지 대상국에게는 그 결과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던 것이다. 실제로 그 기간을 이용하여 세이프가드(보장조치) 조치 실시 전에 약국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경우도 있다.

둘째, 세이프가드(보장조치) 실시기한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했다. 종전 세이프가드의 실시기한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피해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기한을 4년 더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실시기한을 종전과 같이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연장기한을 6년으로 하여 최장 10년 까지 늘렸다. 이는 'WTO세이프가드협정'에 명시된 총 연한 8년보다도 긴 것으로 향후 다른 WTO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2) 반덤핑 조례

중국에서 반덤핑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1994년 5월 12일 제8기 全國人民代表大會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이 통과되면서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반덤핑/반보조금 행정사건 심사관련 응용법률 약간규정>>을 공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WTO반덤핑협정>>, <<WTO보조금 및 반보조금조치협정>> 및 <<행정소송법>>을 기초로 제정된 본 규정은 각각 사법심사 범위, 소송 참여인, 관할범위, 사법심사 표준, 입정방식 등 구체적인 사법심사 절차에 대해 규정, 이에

13) 정운수, 한-중 무역 분쟁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12, P.9

따라 중국정부의 반덤핑·반보조금 관련 결정에 불복하는 수출입 업자는 중국법원(피소소재지 고급인민법원이나 고급인민법원이 지정하는 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번 조치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중국에서는 드물게 정부의 행위를 사법부에서 일부나마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의의가 있다.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최근 <<반덤핑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 <<반보조금 산업피해조사 및 재결규정>>, <<보장조치(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및 재결규정>>을 공포하여 200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반덤핑·반보조금·보장조치 조례의 구체적 실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중국의 관련법규가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① 반덤핑 조치

중국의 반덤핑조치는 임시반덤핑조치 및 반덤핑세이다. 어느 경우에도 반덤핑조치를 받는 당사자는 중국에서의 덤핑제품의 수입자이다.

(가) 임시반덤핑조치

임시반덤핑조치는 예비판정으로 덤핑에 의한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경우에 최종판정을 기다리다가는 국내 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취하는 규제조치이다. 내용적으로는 예비판정으로 판정된 덤핑 폭에 상당하는 금액의 임시 반덤핑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수입자에게 보증서 및 기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⁴⁾ 임시반덤핑세의 기한은 예비판정 공고일로부터 최종판정까지 4개월부터 특수 상황이 있으면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¹⁵⁾

최종 판정에서 확정된 반덤핑 세금이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임시 반덤핑 세금 또는 담보물의 평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반덤핑세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임시 반덤핑세 또는 담보물의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반환하거나 세금 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¹⁶⁾

14) <<중국반덤핑 조례>> 제28조

15) <<중국반덤핑 조례>> 제30조

16) <<중국반덤핑 조례>> 제43조

(나) 반덤핑세

반덤핑세는 최종판정에서 덤핑 및 덤핑에 의한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경우 수입자에게 취하는 조치이며, 최종판정에서 판단된 덤핑 폭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된다. 반덤핑세의 납세의무자는 덤핑수입제품을 수입하는 경영업체이며, 반덤핑세의 징수기간은 5년이다.¹⁷⁾

최종 판정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있다고 확정되고 최종 판정 이전에 이미 임시 반덤핑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부과하는 반덤핑세는 임시 반덤핑 조치가 시행된 기간까지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다.¹⁸⁾

또한 임시 반덤핑 조치가 취해지기 전 90일 동안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도 ①덤핑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손해를 미친 덤핑 경력이 있거나 또는 해당제품의 수입 경제업체가 수출 경영업체의 덤핑 및 덤핑으로 인하여 야기될 국내산업의 손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지하여야 하는 경우, ②덤핑수입제품이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수입되어 곧 실시될 반덤핑세의 보전효과를 크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반덤핑세를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악질적인 덤핑에 대한 징벌 조치라 할 수 있다.¹⁹⁾

최종 판정에서 반덤핑 세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거나 최종 판정에서 반덤핑 세금의 소급 적용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징수한 반덤핑 세금 및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보증서 또는 기타 형식으로 제공된 담보물에 설정된 담보권은 해제 하여야 한다.²⁰⁾

② 반덤핑 조사 기관

반덤핑 조사기관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제32조는 덤핑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무원이 정한 부문 또는 기관”이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다. 반덤핑조례 제11조는 조사 신청을 대외 무역경제 합작부에 제기할 것을 규정하여 대외 무역 경제 합작부가 조사의 중심 기관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조사절차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조사절차의 유일한 기관은 아니다. 즉 일정한 조사 단계

17) <<중국반덤핑 조례>> 제48조

18) <<중국반덤핑 조례>> 제43조

19) <<貿易常務研究>> 제31권 第4篇 電子貿易 및 기타 2006.8

20) <<중국반덤핑 조례>> 제45조

에 있어서 다양한 정부 부문 및 기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예컨대 서면 신청에 의한 조사의 개시여부 및 직원조사개시의 결정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덤핑의 수준에 관한 조사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수행하며, 피해의 존재 및 피해의 정도는 국가 경제무역위원회가 국무원의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덤핑의 예비결정과 최종결정에서 각각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덤핑결정을 하고, 국가경제위원회는 피해의 결정을 하며,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이를 공고한다.²¹⁾ 1992년 수교이후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반덤핑 조치등을 통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간 통상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²²⁾

4). 관세 및 통관관리²³⁾

WTO가입 양허 안에 따라 딸기 등 44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인하되어 2007년 중국의 평균 관세는 기존 9.9%에서 9.8%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그중 농산품 평균관세는 15.2%, 공산품 평균관세는 8.95%이다.

* 중국 수출입관세 세칙 조정 내용

- (1) 제품 주요 원자재 및 부품 등 300여 품목에 수입 잠정세율 적용
- (2) 에너지소모형 제품 중 수입관세 징수 대상 확대
- (3) 사치품에 대한 수입관세 대폭 인상
골프용구 고급손목시계: 10%-30%
화장품: 20%-50%
- (4) 일부 국가에 특수 우대세율 적용
원산지가 ASEAN10개국, 칠레, 한국 등인 수입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 적용
원산지가 미얀마,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여개 후진국에 특별 우대세율 적용
- (5) 일부 지역에 무관세 지속 적용

21) 潘燕梅, 韓·中 貿易과 投資政策 및 通商摩擦, 成均館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4, PP.50-51

22) 지식정보실 보도자료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경전>> 2007.8.21

23) <http://www.chinagate.com.cn> 2008.8.5

원산지가 홍콩, 마카오인 제품에 대해 무관세 지속 적용
 원산지가 대만 등인 제품에 대해 무관세 지속 적용

<표2-7> WTO가입후 (2010년까지) 중국의 관세율 인하

항목	가입시(2001년)	최종년도(2010년)
단순평균(%)	15.3	9.8
농산품(977개 품목, %)	19.3	15.2
공산품(6174개 품목, %)	12.7	8.9

자료: 한국무역협회 <WTO가입후 중국의 무역장벽화>보도자료 2005.5

2. 한국의 일부 대외무역제도

1) 한국 대외무역법의 목적, 성격 및 특성

한국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 전단의 대외무역을 진흥한다 함이 한국의 대외무역법의 기본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통상의 확대를 통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에 기여하고 종래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²⁵⁾

한국 대외무역법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²⁶⁾라고 선언함으로써 한국 무역정책이 나아갈 기본방향을 명백히 하고 있다.

(1)수출입관리를 위한 기본법: 한국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관리, 즉 수출입관리를 위한 일반법이자 기본법이다.

(2)국제성 및 무역에 관한 규제 최소화: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거래를 관리하는 법이므로 국제성을 인정하여 국제상관습이나 국제조약을 준수하되, 국제법규나 국제협정에서 무역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을 최소한 범

24) 한국 대외무역법 제1조

25) 이춘삼·김만길·이재영, <<최신 대외무역법>>, 우용출판사, 2006.7, P.23

26) 한국 대외무역법 제3조

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다.

(3) 위임 입법적 성격: 무역거래의 규제대상은 유동적이고 규제방법은 추상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칙적인 사항만 규정해 놓고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이나 대외무역관리 규정 에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보충하기 위해 법규 보충적 작용 을 담당하는 고시, 공고, 유권해석, 예규, 통첩 등이 활용된다.²⁷⁾

2) 반덤핑제도

한국의 반덤핑제도는 관세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4조 2-15항, 대외무역법 제35조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은 1986년에 덤핑방지관세협정에 가입하였으며, 1987년에 무역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최근 들어 반덤핑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입 자유화의 확대 이후 외국 제품의 수입이 급증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제도의 활용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덤핑관세 제도의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로는 덤핑피해를 주로 당하는 중소기업들이 반덤핑관세 제도를 활용하기 보다는 조정관세 등 탄력관세를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반덤핑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제소비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덤핑제도의 활용을 꺼리는 점도 작용하였으며, 해외시장에 진출한 국내수출기업에 대한 외국의 맞대응을 우려하여 국내 업체가 제소를 꺼려한 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반덤핑관세 제도를 WTO반덤핑협상의 내용과 일치시키면서 동시에 반덤핑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구체조치의 시행을 위한 조사기간의 재조정 및 예비판정제도의 활성화와 피해판정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피해판정 기업으로는 일원적인 분석방법과 이 단계 분석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WTO협정에서는 피해판정기준과 관련하여 덤핑된 수입품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 초래된 산업피해를 고려해서는 안 되며, 산업피해가 덤핑행위의 영향에 의한 것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²⁸⁾

3) 세이프가드제도(보장조치)

27)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울출판사, 2006, P.114

28) 潘燕梅, 韓中 貿易과 投資政策 및 通商摩擦, 成均館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51

한국 세이프가드 제도의 법적 근거는 대외무역법인데, 수입급증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의 구제는 대외무역법 제26-30조, 동법 시행령 제61-76조, 그리고 수입에 의한 산업 피해조사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인 무역위원회고시 제90-1호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1989년 GATT 11조국이행 후 종전의 산업영향조사 제도를 개편하고, GATT 제19조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세이프가드 제도를 정비하였다.²⁹⁾

대외무역법 제29조에는 조사시간 중 회복하기 곤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서는 잠정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잠정조치의 형태로서는 수량제한, 관세율인하, 수입중지 등을 인정하고 있다. 최종판정시 무혐의판정이 날 수도 있으므로 수입을 완전 금지시키는 수량제한보다는 무혐의 판정 시 관세 환불이 가능한 관세율 이상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조금제도

한국정부는 직접적인 수출지원제도로써 금융, 관세, 보험 등 각종수단을 지난 19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활용하였다. 금융지원은 수출산업에 대한 특별자금지원 제도와 수출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주는 수출금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자금가용성 및 금리상의 우대를 통해 수출부문의 금융상 애로요인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UR보조금협정은 금지보조 일정기간 내에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WTO출범 당시 한국이 운영하고 있던 수출보조금 중에서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은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그리고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 중의 설비투자자금과 관련한 3개의 수출보조금과 설비투자세액공제, 정보통신 진흥기금 중국산 주전산기 보급 확대 사업과 관련한 2개의 수입대체보조금 등 총 5개의 금지보조금이 있다. 한편, 상계가능 보조금은 지원대상이 특정업종 및 분야에 한정되며, 교역상대국이 한국 보조금 지원에 따라 산업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외국의 입증 책임 하에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보조금이다. 한국의 보조금중 대부

²⁹⁾ www.kite.net 1999.9 2008.11검색

분은 연구개발, 낙후지역개발 및 환경개선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저·무공해 자동차 기술지원제도, G7프로젝트 환경공학 기술개발지원, 정보통신 진흥기금 중 기술개발 자금, 국책 연구개발 사업자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은 연구보조금에 해당되며, 기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특정 연구 개발 사업 등은 특정성이 없어 WTO협정상 허용되는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³⁰⁾

5) 한국의 중국대외제도에 대응방안

(1) 중국 체제에 대한 대응방안

중국에서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기업 사전에 변호사나 기타 법률전문가를 활용하여 충분한 법률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특히 철저한 계약 검토를 많이 행하고 있다. 예외 없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한국 기업들도 항상 물적 증거를 확보해 두고 구두약정을 별로 믿지 않고 있다.

(2) 교역에 대한 대응방안

투자, 수출규모의 영세, 제조업편중(80%이상), 지역적 편중(발해만 52%, 동북3성 14.3%), 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하다. 지난 한중 두 나라가 수교하는 동안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배로 증가하면서 무역흑자를 나타냈다. 1990년-2003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3%에서 12%로 증가해 미국에 이어 제2의 시장으로 부상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시장 의존도는 각각 23.6%에서 20.8%, 15.1에서 10.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 중국 투자규모도 1992년 271건 2억 600만 달러에서 2002년 6월말 6,634건, 58억 3,000만 달러로 각각 25배와 28배까지 급증했다. 그 중 대 중국 교역품 중 수출 품목은 화학공업제품, 섬유, 전자 및 기기, 철강, 금속, 섬유, 전자 및 기기, 농림수산물 등이 중심이 되었다.³¹⁾

투자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대중국 투자현황의 지리적 인접성, 저렴한 인건비 및 광대한 시장 등 투자요인으로 인해 중국은 한국의 제2대 투자

30) 이남규, <<국제통상정책 삼영사>>, 2002, P.P. 501-505

31) www.kita.net 2006.11.12

대상국으로 인정되었다. 한·중간의 투자추세를 보면 건당 투자기준은 1993년의 989천불에서 1999년까지 평균 658천불이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투자지역의 다변성도 수교 후 초기에 중국 산둥성 및 동북3성에 집중 투자 했던 상황이 최근 상해시, 강소성 등으로 투자지역이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이 한국에 협력과 기회의 땅으로만 자리하지는 않을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성상 생산국의 인건비 수준이 원가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선진국으로부터 설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 업체는 한국 업체의 경쟁상대로 부상할 것이다. 실제전문가들은 한·중 제품 가격경쟁력은 인건비, 재료비, 금융비용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 경쟁력, 기술 개발력, 생산제품 구성 등 비 원가 부문에 있어서는 중국이 한국에 열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 업체들 간 상호보완적 관계의 유지·발전이 필요하다. 한국 업체들은 중국을 주요 수출 대상지역으로 중점 관리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사전준비 및 한국 내 주요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무역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국내 경제주체간의 교환과 마찬가지로 나라 간에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한 물건을 자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가 간 분업으로 양국 모두 이득을 얻어 더 부유해질 수 있다. 자유무역을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을 환영받지 못한 이유는 내부적인 소득재분배 때문일 것이다. 7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상품의 많은 부분을 한국이 공급하였지만 지금은 중국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국이 노동집약적인 상품 생산에서 더 이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이제는 미디엄 내지 하이테크 제품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국가 간 비교우위가 이동하는 것은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다른 나라에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상품도 사주어야 한다는 점이

다.

그리고 지속적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수입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외국의 수입은 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외환이 있어야 가능하다. 수출은 하고 수입은 막겠다는 것은 외국의 수입능력을 저하시켜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환이란 문자 그대로 서로간의 행위이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수출만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무역의 이득을 감소시키고 무역 마찰을 유발할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³²⁾

3. 한·중 무역에 존재하는 문제

1)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의 심화

한·중 양국 무역은 계속 성장 과정 중에 있으나,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 적자는 1992년 양국 수교시의 8.34억 달러에서 무역액의 증가와 함께 올랐다. 1997년 50억 달러를 돌파하자, 적자 금액도 계속 확대되어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무역 적자는 318.41억 달러에 달했다. 수교 이후, 2004년 11월에는 중국과 한국의 무역 적자 누계액은 이미 1295.21억 달러에 달했다. 무역의 불균형은 반드시 양국 무역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한·중 무역 적자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 그러므로 전면적이고 다각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실행 가능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여 해결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중 무역 적자 원인은 주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이다.

첫째, 한·중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이다. 이것은 주로 양국 수입상품의 수요구조와 직접투자의 차이 두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출입 상품의 구조 차이는 한·중 무역 적자를 발생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양국이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처해 있으며, 각국이 보유한 천연자원에는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비교 우위 이론에 따르면, 한·중 전통 무

³²⁾ 김정화, 중국무역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54-55

역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이론에 부합한다. 즉 중국은 한국에 기초 상품 또는 저 기술 보유량, 저부가가치의 노동력 밀집형 공업제품 원재료, 농산물, 방직의류 등을 수출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에 기술과 자본 밀집형 공업 완제품, 예를 들면 화공약품, 전자통신설비,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비록 최근 몇 년간 양국의 수출입 상품 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빠른 속도로 신장하고 있다. 한국 자본은 이미 중국의 주요 외자 출처 중 하나가 되었다.

둘째, 한국 정부가 경제무역이 발전과정 있어서 이중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한 방면에서 한국 정부는 일련의 조치를 채택하여, 자국의 상품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촉진하여, 그 수출액이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다른 방면으로 한국정부는 또 단독으로 조치를 취하여, 중국 상품의 정상적인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

2) 한국의 무역 장벽 문제의 심화

자국 시장의 보호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다양한 종류의 제한과 기타 국가 상품 수입시장의 조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무역 장벽 조치의 실시는 중국 상품의 한국 수출에 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은 27종의 농산물과 경공업 상품에서 수입 조정 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 중 17종의 상품이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의 기술적 장벽 역시 매우 심각하다. 한국의 중국에 대해 기술적 장벽을 실시하고 있는 상품들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 및 식품첨가류와 의약 및 의약 원료 등이다.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주의할 것은 생과일과 돼지고기, 쇠고기 등 동물성 생선과 의약(특히 중의약품) 등은 한국에 정상적인 수출이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검사, 검역과 안전기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 상품에 대해 차별대우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부터의 농산품에 대하여 한국은 6%의 비율에 근거하여 표본검사를 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국가의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3%의 표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3) 양국 간의 덤핑 반덤핑의 확대 추세

한·중 양국 각국의 관세 수준은 모두 대폭 하락하였고, 비관세 장벽 조치 역시 큰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 많은 국가들이 더욱 반덤핑 조치를 채택하여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한국은 중국이 하나의 시장경제 국가임을 부인하고, 중국 상품 덤핑을 처분 할 때, 여전히 “비 시장경제” 기준인 제 3 국 가격을 사용하여 참고하고 있다. 이것은 한·중 무역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된다. 동시에, 중국에서 국외상품 수입에 대해 중국 시장의 반덤핑을 강화한 후, 많은 한국 저가 덤핑 상품에 영향을 주고 있다. 1997년 중국 제1의 반덤핑 안은 곧 한국 기업과 관련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일부 한국 기업에 대해 55%의 반덤핑 세금을 징수하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안은 스테인리스 스틸 박판과 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대, 동판지 등의 상품과 관련되어 있다. 이밖에, 중국의 실력이 증강됨에 따라, 한·중 양국은 방직제품인 의류업계 등의 영역 상품의 경쟁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잠재된 무역 마찰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4) 양국의 특정 영역 내에 존재하는 격렬한 시장 경쟁

세계 시장에서 중국은 노동력 생산원가가 낮다는 우위가 있다. 많은 상품들이 이러한 우위를 사용하여 그 시장 브랜드를 넓혀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일련의 전통 산업들은 이미 중국을 앞지르고 있다. 반도체, 계산기 등의 최첨단 공업 부분은 중국이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이러한 영역에서 한국을 최대의 경쟁 호적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간, 선진국과 중등 발전 국가들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가들의 점유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동남아, 멕시코 등의 국가 등이다. 그 가운데는 3배 이상 증가한 나라도 있다. 중국 공업화 정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수출 상품 구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초급 상품을 중심으로 삼는 것에서, 공업상품으로 중심으로 하는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수출 상품 구조가 점차적으로 한국에 근접하고 있다. 화학, 운수기계, 철강, 기계 등의 영역에서는 한국 상품이 비교적 우위를 갖추고,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며, 경공업, 가전, 산업용 부속

품의 영역에서는 중국상품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우위를 지속해 가고 있다. 타이어, 안경테, 유류제품(油類製品), 인조섬유, 강판 등 상품에서는 한국이 우세한 위치에 있으나,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축소되어가는 중이다. 이밖에도, 한국 삼성 경제 연구소의 연구는 양국의 산업 가운데, 의복을 제외한 기타 경공업 상품은 중국의 경쟁력이 보편적으로 한국을 능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자동차, 강철, 고무타이어 등의 영역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표명하였다.

4. 무역 분쟁의 요인 분석

1) 제도적 무역분쟁

(1) 관세장벽

각 나라의 관세 구조는 많은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목별 세율 책정 시 자국 산업의 보호와 사치성 수입 억제 등의 정책 요인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중국의 관세율은 보통세율과 우대세율의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1992년 이후 중·한 수교 이후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품목별 세율은 생산재는 비교적 낮은 반면, 소비재는 책정하고 있으며 생산재 중에서도 원자재에 가까울수록 관세율이 낮고 가공도가 높을수록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소비재는 생필품일 경우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반면, 사치재일 경우 50~100%의 고관세율이 부과하고 있다.

90년대 중국 정부의 관세율 인하 조치들을 살펴보면 자원, 원자재, 국내 공급 부족 물자, 첨단기술제품 등에 대한 인하 폭은 큰 반면, 국내 산업보호가 필요한 농산물, 방직품, 경공업 제품 등에 대해서는 종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인하에 그치고 있다.³³⁾

90년대에 들어와 WTO에 가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인하여 평균관세율이 1992년 43.1%에서 2002년에는 12%로 31.1%포인트나 감소했으나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WTO 체재 내에서는 아직 높은 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관세율 인하를 많이 하였다.

³³⁾ 사원자원부보고서, 2002.1.27

중국 정부는 WTO가입 후 단계적으로 2005년 10%, 2010년 5%로 관세를 인하할 계획임을 발표하며, 한·중 관세에 대한 무역 분쟁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³⁴⁾

(2) 비관세장벽

① 쿼타제

상대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 억제 수단으로 주요 물품에 대해서 쿼타제를 활용하였는데, 쿼타제를 통하여 자국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내수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소득재분배와 교역조건의 개선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② 일반 특정 상품 등기제도

중국정부가 보통 특정 상품 등기제도를 비관세장벽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신청업체에 대해 등기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수입억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상품목: 곡물, 식물유, 주류, 원유, 석면 등 15종이며, 이들 품목의 수입자는 관할 성급(省級) 지방정부의 계획위원회에 등기를 신청하여 <특정상품 수입등기증>을 취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 품목 중 수입허가증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등기제도 하고 수입허가증도 취득해야 하는 2중의 장벽을 통과해야 한다.

③ 기계, 전자 특정상품 입찰제도

자국 내 연구개발 또는 생산기술이 도입되었으나, 시작단계에 있어 국내 관련 업종 보호를 위해 기계·전자제품 중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을 지정하여 중국 기전 설비 입찰 중심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수입 권한을 매입한 후, 외국의 수출업자와 계약체결 가능하다.

④ 기계, 전자 상품 자동등기제도

수입물량 통제 및 조절을 위해 기계·전자제품 중 쿼터 관리품목, 특정상품,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가 사용목적 수입, 임가공 무역 및 외국의 무상원조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자동등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⑤수입 전담회사 지정

³⁴⁾ 每日经济新闻 2007.12.28

주로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고 가격변동이 민감한 품목에 대해 업체를 지정하여 이들 업체들만이 수입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 대상국 및 수입물량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⑥ 품질안전검사제도

자동차등 47개 품목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 수출업체 또는 그의 대리인은 수입 전에 국가 출입국 검역 국에 품질 안전검사를 시청하여 1차로 견본검사에 합격하고 다시 생산현장검사에서도 합격하여야만 CIQ마크를 상품에 부착하고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하였다.³⁵⁾

2) 비제도적 무역 분쟁

수출입 화물의 통관과 관련하여 겪게 되는 애로 요인에 있어서도 관세율(26.8%)이나 통관 절차(22.0%)와 같이 법적, 제도적인 요인 이외에도 비제도적인 요인(과다한 서류 요구, 까다로운 검사 및 행정 처리의 지연, 서비스 부재, 금품 및 부당한 수수료 요구)이 50.4%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과 한국의 무역 거래 시 이러한 비제도적 측면의 애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8> 비제도적 애로요인의 비중

단위: %

애로요인	높은 관세	잡다한 서류 요구	상품검사 와지연처리	행정서비스부재	금품 요구	각종기금 부담	복잡한 통관절차	기타
비중	26.8	15.4	13.8	14.6	3.3	3.2	21.9	0.8

자료: 대한상의 설문조사 2004.12

35) 中国经济网 经济参考报 2005.1

<표 2-9> 한국 업체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

구분	높다	약간높다	보통	약간낮다	낮다	무응답	계
응답자	9	17	59	9	9	9	112
비중	8.0	15.2	52.7	8.0	8.0	8.0	100.0

자료: KOTRA 중국 현지 설문조사 <<21세기 떠오르는 중국시장 그 공략비법>>
2008.8.18

비즈니스에서 실패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이 같은 상대의 제도나 상관습, 그리고 현지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상대국의 의식구조와 상관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KOTRA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현지 설문조사에서 한국 업체의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보통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한국의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³⁶⁾

3) 한·중 무역구조 문제점

(1) 무역수지 불균형

1992년 한·중 수교이후 한·중 간 무역은 급속히 증가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수출은 배로 증가한 반면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적자폭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이후 중국의 무역적자는 해마다 대한국 수출총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2003년 대한국 무역흑자는 1,021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중 무역에 있어 이처럼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야기시키는 원인은 아래와 같다.

① 최근 몇 년간 한국정부는 자국 시장보호를 목적으로 관세조치 이외에도 비관세장벽의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을 보호해 왔다. 한국이 현재 부과하고 있는 27개 항목의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수입조절 관세 중 17가지 항목의 대부분이 중국산 수입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율의 관세로 인해,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더욱 어렵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기술적 무역장벽으로 인해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

36) 정운수, 한·중 무역 분쟁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국제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12, p.p.15-17

및 식품첨가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과일류, 돼지, 소 등의 우제품, 의약품(특히 중의제약품) 등의 품목은 정상적인 수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② 상품공급구조의 차이로 무역적자 심화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주로 화학제품과 기계, 운수설비의 두 가지에서 크게 두드러진다.

2003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이 두 품목에서만 374.2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당시 중국 대한국 적자 총액인 140억 달러를 초과한 수치이다. 하지만 화학제품과 기계 운수설비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중국 상품과 상호 보완성도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입이 불가피하다.

③ 가공무역으로 무역불균형을 초래하다

한국의 대중국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많은 한국기업들은 생산, 가공무역의 거점을 중국으로 대거 이전했다. 그 결과로 우선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 및 부품은 가공 후 제품이 모두 한국으로 역수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한 쌍방 간의 무역 수출입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제품 원산지 변화로 중국은 제3국과는 무역 흑자를 내고 있지만, 대한국 무역에서는 적자를 보이게 되었다. 즉 외자기업이 한국으로부터 대량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가공, 포장 과정을 거쳐 상품화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게 되면, 원래는 한국이 수출하는 제품인데 제품 원산지가 중국으로 변하여 중국이 수출하는 제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들 국가와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게 되는 반면 원재료 및 부품은 한국에서 대량 수입함으로써 한국과는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이다.³⁷⁾

(2) 대중 무역의지도 심화

1992년 한·중 간 수교 이후 한국의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지도의 상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은 수교시점인 1992년

37) 趙秀蘭, 韓·中 貿易構造에 關한 研究, 창원대학교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논문, 2006.12, PP.40-41

3.5%에서 2005년 1-11월 중에는 22%로 높아졌으며 한국의 수출은 물론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중국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만은 할 수 없다.³⁸⁾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수출 환경을 평가해 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여건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먼저 중국경제가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속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중국산완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통상제도와 위안화 절상에 따른 중국의 수출증가율 둔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수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양국 간의 상호보완적인 분업구조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경제의 리스크에 한국의 수출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될 경우 한국경제가 받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며 대중 수출 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중국의 통상압력

한·중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에 의한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 비관세장벽 등의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반덤핑조치이다.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교역 상대국 중 한국에 가장 많은 건수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 조치를 강화했으며 이러한 한국 수입규제 추세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중국이 무역 상대국에 행한 반덤핑 관세 부과 및 조사 건수는 2005년 기준 총 31건이며 이 중에서 한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조사 건수는 21건이다. 한국은 중국이 가한 반덤핑 규제의 약 70%를 차지해 중국의 최대 반덤핑규제 대상국으로 변화한 것이다.

38) <<急速히 커지는 對中國 貿易依存度>>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 2006.11.8

제3장 한·중 무역 분쟁의 사례

I. 한·중 반덤핑현황

2001년 11월 QATAR DOHA에서 개최된 제4차 WTO각료회담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공식적으로 승인되고 2002년 중국이 정식으로 WTO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중국이 WTO가입 후, 경제에는 한국 대중 수출 증대 및 투자기회 확대 등 긍정적 영향, 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격화로 인한 시장 잠식 등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미칠 것이다.

* 산업간 무역 분쟁 및 양국 반덤핑 규제현황

중국이 자국 내 기업을 보호하기위해 펼치는 수입규제책의 가장 큰 "손해"를 본 나라는 한국이다. 중국 수출 길에 나섰다가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은 뒤 가격이 대폭 올라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12건, 종이 3건, 철강 2건, 기타 2건으로 석유화학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성 고무, 신문용지 등 분야는 중국의 수입규제 장벽에 부딪혀 대중국 수출이 급감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이후 신문용지 분야는 중국수출이 96.8% 줄었고, 합성고무(SBR)는 96.7%줄었다.³⁹⁾

39) 정운수, 한 중 무역분쟁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국제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P.21

<표3-1> 중국의 수입규제 대상국

순번	대상국	품명	유형	조사 개시	예비 관정	최종 관정	관정 내용
1	한국 캐나다 미국	신문용지	AD	'97.11.10	'98.7.9	'99.6.3	55~78% ('98.7.10부터5년간) 반덤핑관세 5년연장 ('04.6.30발표)
2	러시아	냉연규소장	AD	'99.3.12	'99.12.30	'11.9.11	6~62% '04.12.30 종료 (연장가능)
3	한국	폴리에스케 르필름	AD	'99.3.16	'99.12.29	'00.8.25	13~46%
4	한국 일본	스텐레스냉 연강판	AD	'99.6.17	'00.4.13	'00.12.18	6~58%
5	일본 미국 독일	아크릴산에 스테르	AD	'99.12.10	'00.11.23	'00.6.9	24~74%
6	한국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폴리우레탄 발포제 (염화메틸렌)	AD	'00.12.20	'01.8.16	'02.6.20	4~66% ('01.8.16부터5년간)
7	한국 일본 태국	폴리스틸렌	AD	'01.2.9	-	'01.12.6	무협의
8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라이신	AD	'01.6.19	-	'02.9.29	무협의
9	한국	폴리에스터 단섬유	AD	'01.8.3	'02.10.22	'03.2.3	2~48%
10	한국	폴리에스터 칩	AD	'01.8.3	'02.10.29	'03.2.3	5~52%
11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니	아크릴레이 트	AD	'01.10.10	'02.12.5	'03.4.10	2~49%
12	일본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에프시론 카르복라탐	AD	'01.12.7	'03.1.7	'03.6.6	5~28% ('03.6.6 부터 5년간 부과)

13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아트지 (중판지)	AD	'02.2.6	'02.11.26 (^{'03.1.31} 조사 기간 6개월 연장발표)	'03.8.6	4~71% (^{'03.8.6} 부터 5년간 부과)
14	한국 일본 인도	무스프탈산 (PA)	AD	'02.3.6	'03.1.7 (^{'03.3.5} 조사 기간 6개월 연장발표)	'03.9.6	0~66% (^{'03.8.31} 부터 5년간 부과)
15	EU	catechol	AD	'02.3.1	'02.11.4 (^{'03.9.28} 조사 기간 6개월 연장발표)	'03.8.27	20~70% (^{'03.8.27} 부터 5년간 부과)
16	한국 일본 러시아	합성고무 (SBR)	AD	'02.3.19	'03.4.16 (^{'03.9.28} 조사 기간 6개월 연장발표)	'03.9.9	0~38% (^{'03.9.9} 부터 5년간 부과)
17	한국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냉연강판	AD	'02.3.23	'03.5.20 (^{'03.3.8} 조사기간 연장발표)	'03.9.23	0~55% (^{'03.9.23} 부터 덤핑 세율은 정하되 잠정 부과않음)
18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대만	PVC	AD	'02.3.29	'03.5.12 (^{'03.3.26} 조사기간 연장발표)	'03.9.29	6~84% (^{'03.9.29} 부터 5년간 부과)
19	한국 미국 일본	TDI	AD	'02.5.21	'03.6.10	'03.11.22	3~49% (^{'03.11.22} 부터 5년간 부과)
20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페놀	AD	'02.8.1	'03.6.9	'04.2.1	3~144% (^{'04.2.1} 부터 5년간 부과)

21	한국 일본	MDI	AD	'02.9.21	-	중료 중국업체 조사시청 철회 ('3.11.28)	-
22	일본 미국 이란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에틸알콜아 민	AD	'03.5.14	'04.3025	-	21~137%
23	한국 미국 일본	광섬유	AD	'03.7.1	'04.6.16	'04.6.16 조사 기간 6개월 연장	7~46%
24	대만	합성필라멘 트사	AD	'03.10.31	-	-	-
25	일본 미국 EU	클로로포렌 고무(CR)	AD	'03.11.10	-	-	-
26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허드라진 허드레이트	AD	'03.12.17	-	-	-
27	한국 미국 태국 대만	골판지	AD	'04.3.31	진행 중	-	-
28	한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비스페놀A	AD	'04.5.12	-	-	-
29	일본 미국 영국 독일	dimethylcyc lo -siloxane	AD	'04.7.16	진행 중	-	-
30	일본 대만	pbt 수지	AD	'05.7.4			
31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	아세톤	AD	'07.3.0	'07.11.23	진행중	임시반덤핑세 부과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2008 주: AD는 반덤핑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의 제1위 수입규제 대상국으로 2004년 보면 19건의 반덤핑 조사 및 규제를 받고 있어 일본 15건, 미국 13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은 수입규제는 한국 수출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양국 간의 교역증대와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표3-2>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했던 8가지 품목

	HS(10단위)	주요수입국 가	반덤핑대상 국	덤핑율(%)	덤핑율(%)
1. 리튬1차전지	8506-50-0000	일본	미국, 일본	34.28-130	5.29-49.63
2. 소다회	2836-20-000	미국, 중국	중국	25.61	23.43
3. 수산화알루미늄	2818-30-9000	일본	일본	33.15-79.13	예비공정판정
4. 알칼리망건전지	8506-10-2000	미국 싱가포르	싱가포르 중국 일본	18.96-128.8	26.7 가격약속
5. 페니실린 G 망간	7202-30-0000	중국	중국	24.68-17.95	17.95-24.68
6. 폴리비닐알콜	3905-30-0000	일본 미국 싱가포르	일본	27.00-59.15	27.00-37.75
7. H형강	7216-33-1000 7216-33-2000	일본	러시아	16.92-16.97	15.13-15.18
8. PS인쇄판	3701-30-9100	독일 일본 네덜란드	일본	24.51-38.16	가격약속 24.51-38.16

자료: 무역위원회 각 설문조사, 무역통계월보(관세청), 무역협회 2006.9.6

주: 덤핑율(정상가격-덤핑가격)/과세가격

II. 한·중 반덤핑 사례 현황

최근 들어 한국이 대중 수출보다 made in china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에서도 한·중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은 밀려드는 한국산제품에 대해 반덤핑 등 적극적

인 수입규제에 나섰으나, 지난해부터는 한국이 거꾸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더 많은 반덤핑 규제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는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자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너무 과하다며 통상정책의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덤핑은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규제하는 조치이다.

산업연구원과 무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총 8건의 반덤핑 조사를 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2007년 한 해 동안 made in korea 제품에 대해 고작 1건만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반덤핑 조사 건수는 항상 중국이 한국을 앞서왔으나, 지난해부터 8대1로 역전됐다. 특히 한국의 반덤핑 심사 및 조사가 중국산 제품을 때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발 무역 분쟁도 예상되고 있다.

1. 제지산업

첫 번째 반덤핑조사사례의 경우, 1995년부터 미국, 캐나다, 및 한국 등 국가에서 생산된 신문지의 중국에 대한 대량 저가수출로 중국 신문지산업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9개 신문지생산기업(吉林造紙有限公司, 广州造紙有限公司, 宜賓紙業股份有限公司, 江西紙業有限公司, 岳陽造紙有限公司, 石硯造紙厂, 齊齊哈爾造紙厂, 鴨綠江造紙厂, 福建南平造紙厂)은 1996년 10월 중국 쓰촨성 이빈시(四川省 宜賓市)에 모여서 수입산 신문지 덤핑사안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⁴⁰⁾ 1997년 11월 대외무역 경제합작부에 제기된 수입 신문지 덤핑조사의 신청을 시작으로 중국의 반덤핑조사사건이 생겼다. 1999년 6월 마지막 반덤핑 조사판결이 내려졌다. 한솔기업은 성실한 대응으로 예비판정에서의 덤핑마진보다 대폭 하락된 9%덤핑마진을 받았고, 기타 한국기업은 비교적 높은 55%덤핑관세를 부과 받았다. 이로 인해 예비판정 이후부터 5년간

⁴⁰⁾ 江城日报 1999.10.1

덤핑관세가 적용되어 신문용지 사건은 2003년 7월 10일에 종결되어야 하지만, 상무부는 <<中華人民共和國反傾銷條例>> 제1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규정에 따라 덤핑관세가 종결되어 산업에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바, 2003년 5월 9일 제소업체들의 재심신청을 받아 재심조사⁴¹⁾에 들어갔다. 이후 2004년 7월 1일에 다시 덤핑관세를 부과 받아 신문용지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⁴²⁾ 당시 중국의 반덤핑법이 개정된 직후 내려진 판정으로 한국기업이 중국 법에 대한 사전 정보와 정부와 업계의 빠른 대응과 중국기업이 한국 법에 대한 정보와 빠른 대응이 있었다라면 좋은 판정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여지를 남긴 사례이다. 그리고 이 사례는 제지산업 반덤핑 분쟁의 첫 사례이다.

두 번째 중국 외경무부는 2001년 12월 29일 金東紙業有限公司, 山東萬豪紙業集團股份有限公司, 山東泉林紙業有限責任公司, 江南造紙 등의 제소신청을 받아, 2002년 2월 6일 한국, 일본, 미국, 핀란드 등 4개 국가의 아트지(HS: 48101100, 48101200)에 대한 덤핑조사를 시작하였다. 2001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덤핑조사를, 199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산업피해조사를 시행하였다.⁴³⁾

제지 가운데 아트지는 중국의 수입지량의 절반정도로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2년 11월 26일 예비판정을 통해 반덤핑 임시 관세를 부과, 한국 업체들은 7.23~51.09% 덤핑관세를 받았다.⁴⁴⁾ 상무부는 조사개시이후반기 18개월만인 2003년 8월 6일 한국산 아트지에 최종 판정을 내려, 한국 기업은 4%~51% 덤핑 관세를 부과 받았다.⁴⁵⁾

국가경무위에 따르면 2001년과 2000년 중국 4개 제소 기업의 아트지 생산 비중은 각각 중국 전체 생산량의 56.5%, 65.6%를 차지하였다. 피해

41) 商务部对原产于加拿大, 韩国, 美国的进口新闻纸所适用的反倾销措施进行期终复审调查报告 商务部于2003年7月1日发布2003年第28号公告.

42) 我国对原产于加拿大, 韩国, 美国的进口新闻纸作出反倾销复审裁决 商务部公告2004年第30号

43) 我国对原产于韩国, 日本, 美国和芬兰的铜版纸进行反倾销立案调查报告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经济合作部公告2002年第4号

44) 关于对原产于韩国, 日本, 美国和芬兰的铜版纸反倾销调查的初步公告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经济合作部 2002年第45号公告

45) 我国对原产于韩国, 日本, 美国和芬兰的进口铜版纸作出反倾销终裁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公告2003年第30号

소 3개국에서 수입되는 아티지양은 전체 수입량의 1999년 52%, 2000년 36% 그리고 2001년 32%로 조사이후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중국내 동종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99년(2.97%), 2000년(24.73%), 2001년(26.36%)로 늘었지만, 여전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동기간 수입된 아티지 가운데 평균 원가보다 낮게 판매된 것이 20%이상을 구성하여 산업 피해 정도를 말하고 있다. 한편, 한국 업체들은 2002년부터 외국으로 아티지를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⁶⁾

셋 번째 2007년 11월 6일 한국무역위원회는 한국 쌍용제지, EN제지의 반덤핑조사 신청에 따라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러시아, 캐나다에서 수입한 크라프트지(HS: 48042100.00, 48042900.00)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시작하였다. 덤핑조사일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2008년 4월 8일 한국무역위원회 제253차 회의에서 중국 외 5개국에서 수입한 크라프트지에게 임시반덤핑세 4.31%를 부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중에서 湖南格林集團有限公司 4.31%, 青島海王紙業集團公司 16.13%, 天津天保世紀貿易發展有限公司 16.13%, 기타기업 7.96%).

2008년 9월 24일 한국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러시아, 캐나다에서 수입한 크라프트지상품에게 최종반덤핑세를 결정했다. 그 중에서 중국기업에게 4.03%-10.79%를 부과 할 것이고, 기간은 3년이다.

종전에는 중국기업들이 외국에서 소송을 걸을 것을 반덤핑제도와 문화적인 지식을 부족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서 두려워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외 반덤핑조사를 대응하기 시작하였다.⁴⁷⁾

2. 석유화학산업

1) 중국 상무부는 2004년 5월 10일 藍星化工新材料股份有限公司의 반덤핑 재소를 접수하고, 2004년 5월 12일 상무부 제19호 공고를 통해 원산

46) 최정은, 중국의 대한 반덤핑조치 운용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39

47) <http://www.cacs.gov.cn/zhongmeimaoyi/show.aspx?str1=17&articleid=38242>

<http://www.cacs.gov.cn/zhongmeimaoyi/show.aspx?str1=17&articleid=45472> 2008.11.1 검색

지가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한국과 대만지역인 수입 비스테놀A(BPA. HS: 2907230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덤핑조사는 2003년 1월 1일부터 1년간, 산업피해조사는 2000년 1월 1일부터 4년간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⁴⁸⁾ 이번 조사는 공고 발표일로부터 2005년 5월 12일까지이고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2005년 11월 12일까지 연장한다.

중국 상무부는 통상 제소 접수 후 해당 품목의 덤핑 및 산업피해의 존재, 덤핑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하여 1개월 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중국 측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비스페놀의 7번째 대중수출국으로, 중국점유율은 6.4%였다. 2005년에는 본제품의 대중수출이 없어 피해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조기 종결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기울일 전망이다.

중국 신화사에 따르면 2003년 중국내 비스테놀A에 대한 소비량이 67만톤으로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80%는 수입제품이라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비스테놀A 생산업체인 藍星化工新材料股份有限公司과 天津双酚化工新材料股份有限公司 2개 업체의 생산량은 매년 10만 톤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제소 업체들로부터 수입량이 매년 평균 28.5% 성장하여 중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 따라서 중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이번 반덤핑 조치는 행하였으며, 동시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국내 비스테놀A 기업을 건설하고, 적극적으로 육성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⁴⁹⁾

2) 또한 EPDM⁵⁰⁾에 관한 반덤핑 사례이다. 중국 상무부는 2004년 6월 16일 吉林化學工業股份有限公司의 제소로 2004년 8월 10일 화학제품완료로 사용되는 EPDM(HS: 4002-70-1000, 4002-70-9000)에 대한 덤핑 조사개시를 발표하였다. 吉林化學工業股份有限公司은 중국내 유일한 EPDM회사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 전체 생산을 모두 맡아왔다. 덤핑조사는 2003년 4월 1일부터 1년간, 산업 피해조사는 2001년 1월 1일-2004년 3월 31일까지가 그 대상으로 동기간 조사를 통해 예비판정

48) 商务部公告2004年第19号 双酚A立案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04年5月12日

49) 双酚A反倾销案对国内进口产品的影响 中国化工报 2005年2月17日

50) EPDM(ethylene propylene non-conjugated diene rubber)은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중합시키만든 유기화합물로 자동차 부품과 기계부품, 전기부품 등에 사용된다.

을 내릴 예정이다.⁵¹⁾

중국은 한국 최대의 EPDM 수출 대상국으로 대중수출은 2000년 2.8백만 달러에서 2001년 3.0백만 달러, 2002년 3.8백만 달러, 2003년 6.0백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 중국의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입 총액은 중국 전체 수출입중 13.7%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산업 내 무역적자가 2003년 대비 54.8% 증가한 768억 달러에 이르렀다. 주로 원유 수입과 원유가가 급등하였고, 국내 공급이 부족한 제품들에서 수입량이 늘어났던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출용 석유화학 제품은 대부분 저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출제품 구조 고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주력 수출상품인 합성고무제품과 농용화학품 등은 오히려 반덤핑 제소 및 환경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이 크다.

3) 또한 1999년 11월 5일 소다회 재심사요청물품인 중국산 소다회(Sodium Carbonate, HS: 2836.20.0000 일반화학명으로는 탄산나트륨 'Na₂CO₃'을 말하며, 소금과 석회석을 합성하여 제조된 백색분말 결정체임) 국내생산업체인 동양화학공업(株)은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이 종료될 경우,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소다회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재심사요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재정경제부장관은 1999년 11월 22일 무역위원회에 재심사필요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1999년 12월 8일 제14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재심사를 개시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1999년 12월 16일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국무역위원회는 1999년 12월 27일 한국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관련업체에게 질문서를 발송함으로써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조사에 들어갔다. 그런

51)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公告2004年第42号 对原产于美国韩国荷兰的进口三元乙丙橡胶进行反倾销立案调查.

데 본 재심사건은 93년도 원심과 96년도에 제1차 재심을 거쳐 이번에 다시 제2차에 걸쳐 재소한 특별한 사례이다. 이하에서는 국내산업 피해부문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직접 알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인(국내생산자)과 피신청인(수입자·수요자)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6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수출자인 중국의 中國化工總公司, 中華河北進出口公司 등 2개사는 같은 해 6월 5일 무역위원회에 자사의 대한민국 소다회수출가격을 155불/톤(CIF)로 한다는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s)을 제의하였고, 한국생산자인 동양화학공업(株)은 같은 해 6월 20일 이들의 가격약속제의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소다회의 국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위의 2개사는 같은 해 9월 30일에 대한민국 소다회 수출가격을 141불/톤(CIF)으로 한다는 가격약속을 수정 제의하였고, 국내생산자인 동양화학공업(株)은 같은 해 10월 5일 이들의 가격약속수정제의에 동의하였다. 한편 靑島海萬公司도 같은 해 11월말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출가격을 141불/톤(CIF)으로 한다는 가격약속을 제의하였다.

이어서 무역위원회는 2000년 10월 16일 제 15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하고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을 연장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 건의하였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같은 해 12월 4일 中國化工總公司, 中華河北進出口公司, 靑島海萬公司 등 3개 가격약속업체가 제의한 대한민국 수출가격(141불/톤(CIF))을 수락하고, 天津渤海化工有限公司에 대하여 26.47%의 덤핑방지관세를, 기타의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25.61%의 덤핑방지관세를 각각 부과하며, 가격약속기간 및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고 결정, 공고하였다.

4) 또 PVC에 관한 반덤핑 사례가 있다. 중국은 2003년 9월 29일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인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 파이프, 창틀, 자동차부품 등 원료)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에 대한 마진율은 예비판정시의 10-13%보다 낮아진 6-12%로, 여타 피해소국에 비해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업체별 마진율은 지난 5월 예비판정시 각각 LG화학(10%), 한화석유화학(13%)이었으나, 실사이후 LG화학은 6%로, 한화석유화학은 12%로 낮아졌다.

한국산 PVC의 중국수출은 '02년 97백 달러로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이 일본, 대만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2002년 PVC 자급률이 60%로서 수입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중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중국정부는 중국 석유화학업체의 반덤핑제소에 따라 2001년 3월 29일부터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러시아 등 5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PVC에 대해 조사했다.

<표3-3> 한국의 PVC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1-8)
전체수출(A)	213.9(-24.7)	275.6(28.8)	199.7(-27.5)	173.4(-13.2)	147.7(43.9)
對中수출(B)	131.1(-20.6)	170.8(30.2)	140.9(-17.5)	96.7(-31.4)	80,6(38.1)
對中비중(B/A)	61.3	61.9	70.5	55.7	54.6

자료: 한국무역위원회 보고서 2004. 2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에 의하면 중국 상무부는 9월 29일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러시아, 대만 등 5개국 산 PVC(Poly Vinyl Chloride, H.S. 3904-10-0000)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은 LG화학이 6%, 한화석유화학이 12%, 기타 76%, 일본은 7-84%, 미국은 11-83%, 러시아는 34-47%, 대만은 10-25% 등으로 예비판정에 이어 조사대상국중 대만과 함께 낮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아 향후 PVC 대중 수출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5) 중국 상무부는 2005년 2월 23일 山東烟台氨綸股份有限公司, 浙江華峰氨綸股份有限公司, 紹興龍山氨綸股份有限公司 3개 스판덱스 업체들로부터 제소 신청을 받고, 2005년 4월 13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대만 산의 스판덱스(spandex, HS: 54024920, 54026920)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덩펑조사는 2004년 1월 1일부터 1년간, 산업피해는 2001년 1월 1일부터 4년 동안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스판덱스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시작되자, 한국화섬협회는 6월 10일, 11일 양일간 열릴 제4차 한·중 화섬업계 대화회의를 "보이콧"할 계획이라며, 2001년부터 진행되어온 양국간 교류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런 판정이라는 입장이다.⁵²⁾

화학섬유 시장에서 한·중 간 무역 경제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전 세계 화학섬유제품 생산의 37.4%를 점유하면서 동시에 국내수요의 증가로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화섬업계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2003년 말 전체 섬유기업 중 민영기업이 76.4%로 전체 생산의 54.1%를 차지하여, 앞으로도 국유기업보다는 민영 및 외자기업위주로 산업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6년 2월 들어 중국의 165개 화섬생산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20.29%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수입량은 5.2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섬유업의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산업대표자격자로 협회를 내세워 제소를 진행하여, 산업 자체에 보호막을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한국의 중국 수출량이 40% 정도로 중국 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경쟁심화로 어려움이 많다며 서로 상호 협력하자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이해 못해 한국에게만 덩펑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⁵³⁾

3. 철강업

1) 중국 외경무부는 2002년 2월 20일 上海宝钢集团公司, 鞍山钢铁集团公司, 武汉钢铁股份有限公司 3개 업체들의 제소로, 2002년 3월 20일 한국,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5개국 산 냉연강판냉연강판

52) 서울경제신문 2005.4.19

53) 헤럴드경제 2002.11.8

(HS:7209.1500,1600,1700,1800,2500,2600,2700,2800,9000,7211.2300, 2900,900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2001년 1월 1일부터 1년간 덤핑조사, 199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산업피해조사기간을 두어, 한국은 9-40%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2003년 5월20일 예비판정을 받았다. 동기간 조사에 의하면, 피제조 업체들의 중국내 판매량은 98년에 비해 99년 10.09%, 2000년 35.49%, 2001년 42.03%로 증대하였다. 가격 또한 2000년에 비해 2002년 13.89% 하락하였다. 반면 중국 업체들의 시장점유율과 성장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최종적으로 2003년 9월 23일 상무부는 0-40% 덤핑 관세를 내렸다. 특히 포스 코는 품질과 가격이 다른 피제조 업체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 평가가 누적되어 덤핑관세부과에서 제외되었다. 2004년 9월 10일 덤핑관세 부과를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⁵⁴⁾

2) 또한 2002년 10월 8일 동부한농화학(株), 동일산업(株), 한합산업(株)이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재심사를 신청하여 2002년 11월 14일 재심사를 개시한 조사 건에 대하여 무역조사실은 조사단을 구성하여 그동안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를 통한 서면조사, 국내 현지실사, 공청회 개최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재심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 하였다. 위원회는 동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그래서 ①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HSK: 7202-30-0000)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 약속 종료 시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고,②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수입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5.6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③중국의 東方礦物進出口貿易有限公司가 제의한 가격약속 제의는 산업피해구제수준에 미달하므로 동 약속 제의를 수락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장

54) 我国对进口冷轧板卷中止执行反倾销措施的复审裁定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公告2004年第53号

관에게 건의하였다.

4. IT업

세계 광섬유 시장은 90년대의 양상과 달리, 2002년에는 광섬유 생산 능력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였다. 이와 같은 구도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투자를 증가시켰으며, 신규기업의 진입도 늘어났다. 창페이회사의 경우, 2001년 연간 생산규모를 500만km로 확대하는 등 제조업체별 계획을 종합하면 2005년 전국 광섬유 생산능력은 3500만km를 넘는다. 특히 중국의 광섬유 시장은 주로 통신, 유선TV, 철타, 전력, 도로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통신과 유선TV가 전체 응용 시장의 80-90%를 점하고 있다. 정보화의 발전, 통신체제 개혁으로 나타난 인터넷경쟁으로 광섬유 응용범위가 간선망에서 접입망으로 확대되어, 매년 15-20%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03년 5월 7일 武漢長飛光纖有限公司와 江蘇法爾勝光子有限公司 2개사로부터 제소신청을 받아 2003년 7월 1일 한국, 미국, 일본산 수입 광섬유(dispersion un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er, HS: 90011000)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덤핑조사는 2002년 4월 1일부터 1년간, 산업피해조사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을 조사 기간으로 한다. 동기간 조사를 통해 2004년 6월 16일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 한국 업체는 7-46% 덤핑관세를 받았다.⁵⁵⁾ 이후 6월 22일 상무부 제29호 공고를 통해 반덤핑 조사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하고, 2005년 1월 1일 최종판정을, 한국 기업들은 유평매직이 13%로 낮아진 것 외에는 예비판정과 동일한 덤핑관세를 받았다.

동기간 조사에 따르면, 피제소 국가들의 제품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인과관세를 보였다. 산업피해조사기간 동안 중국내 동종 산업의 성장은 뚜렷하였으나, 중국산업의 생산능력으로 국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국 업체들의 제품 가격을

55) 商务部公告2004年第28号 对原产于美国, 日本, 韩国的进口非色散位移单模光纤(以下简称“被调查产品”)进行反倾销调查.

낮추어 중국 업체의 생산량의 증가폭이 2002년은 2001년보다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⁵⁶⁾

5. 기타

2007년 5월 1일 한국계획재정부는 중국에 생산 한 유리(HS: 700510 4000, 7005105000, 7005106000, 7005107000, 7005214000, 7005215000, 7005216000, 7005217000, 7005294000, 7005295000, 7005296000, 7005297000) 덤핑조사에 따라 2008년 12월 한국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원산지가 중국의 유리의 수입은 국내 산업에게 피해를 주다고 판정했다.

2008년 3월 18일 한국무역위원회가 중국에서 수입한 유리를 12.73-36.01%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기간은 3년이다. 이 중에서 中國玻璃集團이 덤핑행위를 인정하고 수출가격을 인상 할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반덤핑세를 부과하지 않다.

2008년 7월 13일 WTO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의 반덤핑 사례가 2007년 후반부터 전체적으로 하락한 추이로 나타났다고 했다.

2007년 6월부터 153개 WTO회원국 중에서 14개 국가가 총 101개 반덤핑사례를 조사하는 중에 선진국이 조사한 사례는 45개, 기계설비 반덤핑조사는 23개, 화학품 반덤핑조사는 18개, 방직업 반덤핑조사는 11개. WTO회원국 중 인도는 반덤핑조사를 제일 많이 하고, 동시에 반덤핑 조치를 최고로 많이 적용한 국가다. 2007년 인도는 반덤핑조사를 13개나 하고 무역에 대해 새로운 조치 16항목을 실시하여 전 세계에서 27.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24개, 한국은 10개의 반덤핑 조사를 하였다.⁵⁷⁾

그래서 전 세계의 무역은 진지한 분위기가 점점 완화되고 특히 남북 무역 분쟁을 완화시킨다.

III. 한·중 농산물교역과 무역 분쟁 사례

56)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对原产于美国、日本、韩国的进口非色散位移单模光纤反倾销调查的最终裁定案 2005년 1월1일

57) 经济日报 WTO보고서 2008.7.12

1. 한·중 농산물 무역 분쟁

한·중 간의 무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인접성 등의 이유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농산물 교역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수입증가는 한·중 간의 농산물 무역 분쟁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최근 발생한 한·중 간 농수산물 무역 분쟁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마늘 사례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간의 무역이 급증하고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상호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성장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양국 간의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무역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한·중 마늘분쟁은 양국 간의 대표적인 무역 분쟁 중의 하나이다.

마늘은 수입이 제한되어 왔던 품목이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⁵⁸⁾의 타결과 함께 가공 도에 따라 관세수준이 상이하게 결정이 되는 것으로 개방이 이루어졌다. 이때 신선·냉장, 건조, 일시저장 마늘의 경우 최소시장접근물량(Minimum Market Access: MMA)에는 50%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되 시장 접근물량을 매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5년 396%부터 2004년까지 매년 4%씩 감소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최소시장접근(MMA)물량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이때 냉

58) 우루과이 라운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이 협상은 상품 그룹 협상과 서비스 협상을 양측으로 하여 15개의 의제로 구성된다. 이 의제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GATT체제의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우선 농산물 섬유류 교역이 있다. 이것은 그 동안 GATT체제 밖에 있었으나 이번 UR를 통해 GATT체제로 복귀하거나 흡수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의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GATT 다자간 협상의제로 채택되었다. 둘째, GATT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그 동안 현실에서 상당 부분 훼손되었던 GATT규범을 재복원하고, 경우에 따라 현실에 맞게 새롭게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둔 의제가 포함된다. 셋째, GATT체제의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각료급의 GATT 참여 확대, GATT와 국제통화 및 금융기구와의 있지 않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합의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동마늘과 초산마늘의 경우에는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당시에 국내수요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30%의 저율관세로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발효 이후, 한·중 간의 현격한 마늘가격 차이로 인해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신선마늘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즉 중국으로부터 신선마늘의 수입은 1996년 6,153톤에서 1998년의 25,633톤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마늘수입의 급증은 냉동마늘과 초산마늘의 경우 훨씬 그 정도가 심하였는데 1999년에는 1996년 대비 9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근거하여 한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면서 마늘 분쟁은 시작되었다.

1999년 9월 30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한국국내산 마늘 산업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구조조치 요청을 포함한 산업피해 조사 신청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검토를 통해 조사개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판단이래 1999년 10월 11일 마늘의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였다. 조사단은 무역조사과정은 단장으로 하고, 실무자 3명, 농림부담당자 1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담당연구원 1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단은 조사를 거쳐 국내산업의 긴급한 구제조치가 불가피한 사실을 인정하고 1999년 10월 27일 잠정조치 건의를 결정하였다. 이 건의에 대하여 1999년 11월 18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잠정조치로 관세율 인상을 시행하였다. 관세율 조치의 내용은 냉동마늘 및 초산제 마늘의 30%관세율을 315%로 높여 1999년 11월 18일부터 2000년 6월 4일까지 200일 동안 시행하는 것이었다. 2000년 1월 12일 무역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 2월 2일 최종적으로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려, 2000년 3월 15일 산업피해 구제건의를 결정하였다. 중국이 한국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양자협의를 요청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한·중간 마늘 실무협상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양국 간의 입장 차이를 보면 한국의

<표 3-4> 마늘파동 당시 중국산 마늘 수입 현황

단위: 톤, 천 달러, %

구분	단위	'96	'97	증가율	'98	증가율	'99	증가율
신선·냉동 간마늘 포함	물량	6,153	12,919	110	25,633	98	14,355	44
	금액	6,150	8,156	33	10,533	29	5,939	44
냉동	물량	2,043	3,768	84	7,795	107	18,585	138
	금액	1,414	2,604	84	3,853	48	7,657	99
초산조제	물량	901	1,633	81	2,128	31	3,631	71
	금액	494	832	68	900	8.1	1,322	47
중국산 합계	물량	9,497	18,368	93	35,977	96	37,239	3.5
	금액	8,844	11,618	31	15,435	33	15,924	3.2

자료: 농림부 채소 특작과 보도자료 2000년

<표 3-5> 마늘과동 당시 한국 국내산 마늘가격 추이

단위: 원, %

구분	'96	'97	증가율	'98	증가율	'99	증가율
농가판매가격	1,638	2,001	22.2	2,719	35.9	1,520	44.1
도매시장가격	1,317	1,965	49.2	3,097	57.6	1,859	40.0

자료: 농림부 채소 특작과 보도자료 2000년

<표3-6> 마늘과동 당시 한국 국내산 마늘 생산 및 중국산 마늘 수입추이

단위: 톤, %

구분	'96	'97	증가율	'98	증가율	'99	증가율
국내생산량	455,955	393,834	13.6	393,903	0.0	483,778	22.8
수입량	9,497	18,389	93.6	35,996	95.7	37,250	3.5

자료: 농림부 채소 특작과 보도자료 2000년

입장은 마늘은 한국의 농업에서 쌀 다음으로 중요한 작물이다. 전체농가의 1/3인 42호가 마늘을 경작하며, 생산규모는 1조원 수준이고, 생산량은 전체 농업생산량의 5번째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마늘은 주요 수출 농산물 중 하나로 마늘의 주요 산지 농민의 주요 수입원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농업자원이라는 것이다. 결국 양국의 대립된 주장으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렬되었으며, 한국 측은 2000년 5월 26일 최종 조치내용을 WTO에 통보하여 2000년 5월 31일 한국의 재정경제부과를 최종결정으로 내렸다.

<표 3-7> 마늘과동 당시 긴급과세부과 최종결정 내용

단위: 원/kg

품 명	긴급관세	실행세율		비 고
		부과 전	부과 후	
간마늘	60%(300원/kg)	376%(1,880원/kg)	436%(2,180원/kg)	긴급관세 에 대해 매년 4/100씩 인하
냉동마늘	285%(1,707원/kg)	30%	315%(1,887원/kg)	
초산조제 마늘	285%(1,707원/kg)	30%	315%(1,887원/kg)	

자료: 농림부 채소 특작과 보도자료 2000년

중국은 한국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여 2000년 6월 7일 한국 수출상품 폴리에틸렌 및 휴대전화에 대한잠정 수입중단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런 결과를 두고도 말이 많았다. 결국 마늘을 대량으로 수입하게 되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항의 한번 못하고 굴복해 수입을 결정하고야 말았으며 격렬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 당시에 WTO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의 일반적인 횡포 또는 국제관행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은 중국산 마늘의 수입량 증대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산 마늘의 수입량이 96년부터 98년까지 매년 90% 이상씩 증가했고 99년 경우도 3/4분기까지 22.8% 증가해 한국 국내 농가의 피해가 커 수입제한조치가 불가피했으며 이는 WTO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내 마늘 생산량이 9만 톤이나 증가했으나 수입은 1,200톤 증가에 그쳤다는 한국 관세청 통계를 인용, 한국 마늘 농가의 피해는 자국산 마늘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 WTO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무조건적인 힘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국가(한국, UR)의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말하는 게 그럴 듯 해 보이지 않는가?

물론 폴리에틸렌과 핸드폰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한국이 취했던 조치 및 그 방법은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중국이 6월 한 달간 지속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주력수출품인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입 금지 조치로 폴리에틸렌에서 1,400만 달러, 휴대폰에서 150만 달러가량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했다. 또 5월 선적되어 중국에서 통관 계류 중인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의 수출지연에 따른 피해도 있었다. 반면에 1999년 한국에 대한 중국의 마늘 수출 총액은 593만 9천 달러였으며 2000년 5월까지 수출 총액은 8만3천 달러였다. 결과적으로도 한국이 더 많이 손해를 본 입장이 아닌가?

2) 수산물 위생검역

최근 WTO농산물 분쟁 발생요인 중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동식물 검역 및 검사제도에 대한 것이다. 농약검출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을 규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통 및 운송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나 유해수산물 발생 등의 원인으로 수입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2005년 7월 한국은 중국산 장어와 장어가공품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양식장어에서 세균·곰팡이·기생충 방지약으로 사용되었으나, 1990년 이후 발암가능성 때문에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2005년 7월 28일 실시된 식약청의 중국산 장어에 대한 1차 유해성분 검사에서도 생장어는 8건 중 1건, 양념 장어는 7건에서 유독성분을 검출한 바 있다.⁵⁹⁾

수산물 품질검사원의 2005년 7월부터 8월초까지 수입된 중국산 생장어 25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건에서 이 독소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8월 발암물질이 검출돼 압류된 중국10여개 회사 제품의 양념·초밥용 장어를 조사한 결과, 38건에서 이 독소성분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59) 조선일보 2005년 7월 30일

<표3-8> 중국산 수산물 품목별 부적합현황

(단위: 톤, 천 달러)

품종	2005년 7월 중			2005년 1-7월			부적합사유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계	18	212	567	179	1,064	3,678	
중	4	37	134	64	489	1,442	
냉동낙지				9	164	289	강제물주입
냉동갈치				1	18	47	선도불량
냉동낙지				12	23	63	선도불량
냉동부세				1	5	61	유통기준위반
냉동주꾸미				2	2	3	선도불량
냉동민꽃게				1	0	0	선도불량
냉동까치복				0	0	1	금속검출
냉동검은밀복				2	44	65	수입제한품목
냉동등쪽점육두어				1	12	40	수온기준초과
냉동참돔(헛감)				1	5	41	황색포도상구균기준초과
냉동참조기				1	23	44	강제물주입,금속
냉동갈매기조개살				1	1	3	선도불량
냉동화살오징어				1	4	35	황색포도상구균기준초과
냉동틸라피아(F)				1	0	1	대장균기준초과
마른새우	1	9	68	9	72	551	이산화황
활가리비	2	23	32	10	57	74	카드뮴기준초과
활낙지				1	0	0	폐사
활백합				1	5	3	카드뮴기준초과
활뱀장어	1	6	34	1	6	34	말라카이트그린검출
활민꽃게				1	0	0	폐사
활미구라지				3	47	81	폐사, 납기준초과
활쏘가리				1	1	3	수온기준초과
활피조개				1	0	0	카드뮴기준초과
활흰다리새우				1	0	2	선별불량
활주꾸미				1	0	1	폐사
국							

자료: 한국해양수산부 2007.7.30

한국해양수산부에서는 수입수산물 안전 종합대책을 실시하기로 발표한다. 2005년 9월 13일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 위생 당국 간 회의에서 “중국 측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

전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말라카이트 그린 등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의 식품위생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⁶⁰⁾

한국은 말라카이트그린이 모든 양식어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관련부처와 수입금지 조치를 신중히 협의하고 있다.

3) 김치파동

2005년 10월 20일 한국정부는 중국산 수입김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 이를 발표하기 직전에 양해각서에 따라 중국 정부에 기생충 알 검출 사실을 통보했으며, 중국 측은 자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언론 발표를 늦춰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식품 안전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므로 발표 시기를 늦추 수 없다”고 하자, 중국의 식품 의약 안전 청에 해당하는 질검총국 안전국 실무자가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에게 한국산 수입 화장품을 거론하며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⁶¹⁾

한국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을 2005년 10월 21일과 27일에 중국산 김치 제품을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각각 16개 제품 가운데 9개 (56.3%), 58개 중 15개(25.9%) 제품에서 회충과 구충, 동양모양선충, 사람등포자충의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⁶²⁾

2. 한·중 농산물 교역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일본, 미국, 홍콩에 이어 4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시장점유율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이후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한 반면, EU의 시장점유율이 빠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국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994년 6.4%에서 1997년에는 10.5%까지 급상승한 이후 횡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전 세계 시장에

60) 조선일보 2005년 9월 14일

61) 조선일보 2005년 10월 24일

62) 한국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보고서, 2005.10.27

대해서는 192억 달러의 흑자를 보인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94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에도 지속되어 중국은 한국에 대해 89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였다. 이러한 무역역조 현상으로 인해 최근에는 양국 간 통상 분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특별수입규제와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양국 간 통상 분쟁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무부, 재정부, 농업부, 중국 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가감동위원회 등 7개부서는 10월 18일 연합으로<<농산물 수출 확대에 관한 지도성 의견>>을 발표하고 공동으로 중국 농산물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농산물 수출 확대에 관한 지도성 의견>>은 최근 중국 농산물수출이 급속히 발전하는 동시에 농산물 수출경영 대오가 부단히 우량화되어 중국의 농산물 수출이 이미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예시했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과정에서는 여전히 품질안전 발생, 가공수준 낙후, 브랜드 제품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농산물 수출에 힘써 4-5년 내 300억 달러에 도달하고, 2013년 농산물 수출이 400억 달러에 도달한다는 목표에 따라 이 <<농산물 수출 확대에 관한 지도성 의견>>은 7항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지도성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전면적인 계획수립에 따라 농산물 수출발전목표를 기획하는 것이다.

둘째 농산물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수출상품 구조를 우량화하여 농산물 수출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이다.

넷째 농산물 수출 중점기업을 육성하여 수출 농산물의 업계조직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다섯째 국제시장을 개척하여 농산물 수출 촉진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섯째 농산물 수출촉진의 정책체계를 완비하여 농산물 수출을 건전하게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조치를 건립하는 것이다.

일곱째 농산물 수출 신용보험제도를 완비하여 농산물 수출기업의 위험 대비 능력을 증강하는 것 등이다.

IV. 한·중 지적 소유권분쟁 사례

1. 이 사건은 중국의 WTO 가입 후 지적 소유권 분쟁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2001년 12월 한국 한진기계공업회사(株)가 青島巨星机械有限公司를 그의 공기냉각기와 공기제어기에 “한신” (HANSHIN)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 고소를 했다. 원고는 피고인에게 “한신” (HANSHIN) 상표 사용과 광고를 금지와 33만원 인민폐(CNY)를 요구했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주장은 첫째 “한신” (HANSHIN) 상표는 1995년 5월 1일부터 사용하였고, 한국 한진기계공업회사(株)는 1997년 홍콩으로 수출할 때 처음으로 사용했다, 둘째 “한신” (HANSHIN)은 한국에서 행운한 상표지만 중국에서는 단지 “상표”이다. 셋째 “한신” (HANSHIN) 상표는 한국에서 한국 한진기계공업회사(株)만 사용하는 브랜드는 아니다. 원고는 피고인이 정당경쟁을 진행하고 지적 소유권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후 2002년 12월 27일 青島人民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원고(한국 한진기계공업회사(株))가 주장한 정당경쟁과 지적 소유권 침범 등의 소송요청을 기각했다. 이래서 양기업의 지적 소유권 분쟁은 피고인의 상소로 끝났다.⁶³⁾

2. 미등록된 권리에 대한 위조 침해 상품 유통의 경우이다. 농심은 중국과 홍콩 등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스턴트 식품 제조업체로서 홍콩의 한 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었다. 그러나 홍콩기업은 농심과 거래를 청산한 후 후라면과 포장색깔 및 디자인 등에서 유사한 상품인 辛辣라면이라는 상표로 포장지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고 제조원도 한국으로 표기하여 한국산으로 사용 하여 중국과 홍콩에 유통시켰다. 당시 기업과 개별협상을 통하여 침해를 해소한 후 당국에 등록을 추진하였으나 후이

⁶³⁾ www.fsou.com/ 2008.10.28

라는 글자 하나를 한 기업이 독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지만 현재 홍콩 관련기관에서 상표등록이 안 되는 상황이다.

3. 등록된 권리에 대한 위조 침해된 상품이 유통되는 경우이다. 한국의 기업은 “JALBAGA”란 상표로 재봉틀 바늘을 중국시장에 수출하고 있었다. 중국은 의류 및 봉제산업의 성장으로 재봉틀 바늘에 대한 수요가 높아 해당 기업은 자사의 상표와 제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상표국과 특허국에 해당제품에 대한 상표와 특허를 모두 출원 등록하였다. 하지만 현지 기업에 의하여 상표가 침해되어 조잡한 품질의 재봉틀 바늘이 정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 내에 유통되었고 위조 상품들이 미국과 일본 등의 해외에까지 수출됨으로 인하여 한국의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해당기업은 침해기업, 신원과 증거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⁶⁴⁾

V. 한·중 신용장 분쟁 사례

1. 2002년 4월 24일 한국중소기업은행이 취소불가능 신용장을 개설했다. (NO: MO4E5204NS00484; 개설일: 2002년 4월 24일; 유효기간: 2002년 6월 30일; 수익자: 한국서울청기기업유한공사(株); 발행의뢰인: 連云港口福公司(LIANYUNGAND KUCHIFUKU FOOD CO.STD); 금액: 110500달러; 매입은행: 어떤 은행; 지불방식: 일람 지불(list payment); 지불인: 한국중소기업은행; 최종선적일: 2002년 5월 31일)連云港口福公司는 이 신용장을 받은 후 2002년 6월 6일 중국은행核電站支行에게 이 신용장의 ①환어음, ②커머셜·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③패킹·리스트 원본(packing list), ④선화증권(B/L)원본을 제출했다. 2002년 6월 7일 이 신용장을 한국중소기업은행에게 보냈고, 19일 한국중소기업은행이 4가지 이유로 지급 거절의 고지서를 보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상품명의 인보이

64) <<알기 쉬운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서울 특허청 1999년

스, 페킹·리스트, 선화증권(B/L) 불일치하다. ②선화증권(B/L) 날짜가 위조이다.③환어음상은 INDUSTRIAL BANK OF KOREA SEOUL (HEAD OFFICE SEOUL), 신용장상은 INDUSTRIAL BANK OF KOREA (HEAD OFFICE SEOUL) SEOUL다. ④수취인의 주소가 없다. 중국은행核電站支行이 지급 거절 고지서를 받은 후 20일 한국중소기업은행에 보낸 회신에서 한국중소기업은행의 지급 거절 이유는 불충분하므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한국중소기업은행은 중국은행核電站支行에게 連云港口福公司가 신용장위조 위험이 있음을 통지하였으며 현재 사기형으로 수익자를 고소하려 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다시 보냈다. 連云港口福公司是 2002년 9월까지 신용장의 110,500달러를 못 받았으며 한국중소기업은행과 중국은행核電站支行을 고소했다.

이 사례 중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UCP500법을 기준으로 답변했다.⁶⁵⁾ (한국중소기업은행은 증거제출 기간 안에 증거제출을 하지 않았다.) 당사자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이 사례는 두 가지 문제로 부각 된다. 첫째, 한국중소기업은행은 발행은행으로서 지급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둘째, 중국은행核電站支行은 이 사례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UCP500 제9조 제a항 제I에 따라 취소불능하환 신용장의 증빙서류가 지정한 은행에 제출한 후 문제가 없으면 발행은행이 승낙을 확정하고 즉시 지불해야 한다. 한국중소기업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은 취소불능하환 신용장 때문에 중국은행核電站支行이 신용장의 증빙서류를 한국중소기업은행에게 보낸 후 한국중소기업은행이 발행은행의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 UCP500에 따라 발행은행은 신용장의 증빙서류를 받은 후 은행 업무일 7일 이내 임무를 이행 하거나 증빙서류를 거절 할 경우 7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중소기업은행은 단지 지급 거절의 통지서를 보내고 다른 이유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기”사건은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함으로 인해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한국중소기업은행이 국제관례와 신용장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약 책임을 져야하며 11,0500달러와 이자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65)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一百四十二条之规定, 涉外民事法律关系的法律适用应依照我国法律的有关规定, 我国法律及我国缔结或参加的国际条约没有规定的, 可以适用国际惯例.

이 사례 중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은행核電站支行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이다. 첫째, UCP500제10조⁶⁶⁾에 따르면 중국은행核電站支行은 UCP500에 정하는 협의 지불은행이 아니다.

이에 의하면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제142조 제4항, 국제상회 1993“하환 신용장 관례”제3조 a항, 제9조 a항 I 입, 제10조 b항 II 입, 제10조 c항, 제14조 b항, 제14조 d항 I 입, <<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제128조, 제130조, 최고인민법원의<<關於民事訴訟證據的若干規定>>제2조, 제32조, 제34조 제1항 제2항, 제43조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중소기업은행은 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連云港口福公司에게 MO4E5204NS00484호 신용장 상의 한 110500달러와 이자를 반드시 지불하여야 한다.

② 連云港口福公司是 중국은행核電站支行의 상소를 기각한다.⁶⁷⁾

2. 2004년 3월 5일 한국중소기업은행이 취소 불가능한 신용장을 개설 했다. (NO: M0429403NU30011; 유효기간: 2004년 5월 10일(중국); 금액: 23900 달러; 목적지: 한국 부산; 최종 선적일: 2004년 4월 30일; 지불인: 한국중소기업은행天津分行; 발행의뢰인: 青島華天車輛有限公司; 환어음 지불기간: 환어음 받은 후 90일 이내; 매입은행: 모든 은행가능).

2004년 4월 14일 中國農業銀行膠南支行는 이 신용장의 ①원산지 증명서, ②커머셜·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③패킹·리스트 원본(packing list), ④해상운송 선화증권(B/L), ⑤23900달러 일람 출급 환어음을 한국중소기업은행에게 제출하였다.

2004년 4월 27일 한국중소기업은행이 지급 거절 고지서를 보냈다. 그 이유는 환어음의 기한은 환어음 받은 후 90일 이내가 아니고 일람 지불(list payment) 이라는 것이다. 中國農業銀行膠南支行는 지불일이 받은 후 90일의 환어음을 다시 보냈다. 2004년 5월 19일 한국중소기업은행은

⁶⁶⁾ ucp500第十条的规定, 议付是指由被授权议付的银行对汇票及 / 或单据付出对价。只审查单据而未付出对价并不构成议付, 除非被指定银行是保兑行, 开证行的指定并不能使被指定银行负有付款议付的义务。除非被指定银行明确同意并相应告知受益人, 被指定银行接收及 / 或审查机 / 或转交单据, 并不使其负有付款, 承诺延期付款, 承兑汇票或的议付得义务。

⁶⁷⁾ <http://www.cnarb.com/dwmv/fyal/200801/742.html> 中国仲裁在线 2008.1

기간 초과로 이유로 다시 거절 했다. 그 이후 中國農業銀行膠南支行이 2004년 6월-7월간에 한국중소기업은행에게 여러 번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중소기업은행은 수락 하지 않았다.

이 사례의 주요쟁점은 중소기업은행의 지불거부에 대한 성립여부이다. 첫째 발행의뢰인이 신용장과 동일 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례에서 靑島華天車輛有限公司는 실수로 일람 출급 환어음을 제출하기 때문에 한국중소기업은행이 거절한 이유는 충분하다. 둘째 신용장 제46항⁶⁸⁾에 따라 환어음은 지불방식, 지불기한을 약정한 증표이다.....환어음의 제출날짜는 기한이 없다.... 靑島華天車輛有限公司는 두 번째 제출한 환어음은 신용장과 동일함으로 한국중소기업은행의 두 번째 거절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의하면 UCP500제2조, 제3조(B), 제19조(C),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 제60조, 제77조 제1항, <<中華人民共和國訴訟法>>제128조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중소기업은행은 靑島華天車輛有限公司에게 신용장 상 작성 한 23900달러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② 한국중소기업은행은 靑島華天車輛有限公司에게 신용장 상 작성 한 23900달러의 이자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③ 이상항목 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10일 안에 지불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中華人民共和國訴訟法>>에 따라 체납이자를 지불해야 한다.⁶⁹⁾

제4장 한·중무역분쟁의 해결방안과 발전 방향

68) "交单期限是 运输单据가 签发后 10日内" 제46A항

69) <http://www.cnarb.com/dwmy/fyal/200801/741.html> 中国仲裁在线 2008.1

I. 분쟁의 예방

1. 한국의 차원

어느 나라와 교역을 행하든지 위험은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상업적인 것이건 비상업적인 것이건 교역자들은 어느 정도 그러한 위험을 각오하고 교역을 하게 된다.

대만 기업의 경우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이미 '법 중심'의 중국투자의 접근 방법에 익숙해 있는 반면에,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관계 중심'의 접근에 익숙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이 효과적으로 중국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실무자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을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며, 관계 중심의 접근 방식을 법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중국투자를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왔지만, 투자의 실패로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다. 기존 투자기업들의 실패의 요인 중에 상당 부분이 기업가들의 의식구조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변해가고 있는 중국과 중국인의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법적인 문제를 취급함에는 최근의 변화들을 더욱 주목하여야 한다. 중국투자에 있어서 법적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인식 전환 없이는 효율적인 법적 접근을 위한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업의 영역에서는 기업가의 직관이나 감각 또는 느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것은 효율적인 제도화, 즉 효율적인 법적 대안과 합쳐질 때 더욱 빛을 보게 될 것이다.

1) 투자 준비 단계에서 법적인 문제를 소홀히 한 기업은 투자기업 설립

70) 조수란 <<韓·中 貿易構造에 關한 研究>> 창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p.p.47-55 2006.2

후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투자 준비 단계에서 법적인 문제를 소홀히 한 기업이 많을수록, 투자 후 각 기업의 법률비용 비율이 매우 불규칙하고, 기업 간의 차이가 매우 크며 전체 투자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투자 준비 단계에서 법적인 문제를 철저히 한 기업이 많을수록, 투자 후 각 기업의 법률비용 비율이 아주 고르며, 기업 간의 차이가 거의 없고 전체 투자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낮을 가능성이 있다.

3)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여 투자 준비 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후에 투자에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다.

무역과 관련된 분쟁의 유형은 품질불량, 수량부족, 선적, 대금결제, 수수료 미지급, 계약내용 변경 및 파기, 기타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대금결제로 인한 분쟁의 비율이 45.2%로 가장 높고, 품질불량이 19.2%, 선적 16.6%, 계약내용 변경 및 파기 9.5%의 순으로 분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 계약내용의 변경 및 파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상의 문제로 야기되는 통상적인 상업적 분쟁에 불과하다. 다만 중국과 한국 교역의 경우에는 그 분쟁의 발생률이 다른 국가들 간에 비하여 다소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분쟁 발생 비율이 높은 대금결제, 품질불량, 선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역 시에 이러한 문제에 특별히 유의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⁷¹⁾

2. 중국의 차원

71) <http://cafe.naver.com/yaniinfo/663> 2007.4.4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와 교역을 행하든지 위험은 있게 마련이다. 그 많은 위험 중에서 첫째 반덤핑인식을 강화하고 반덤핑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반덤핑조사를 많이 받는 편이다. WTO자료를 인용한 중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1979년 8월 유럽공동체로부터 반덤핑조치를 부과 받은 이래, 현재까지 600여건의 반덤핑조사를 받았다.⁷²⁾

중국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국가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인도 및 터키 등 개도국들로부터 세계 5대주 30여개 국가에 널리 분포되어있다. 덤핑조사를 받은 상품도 수천 가지에 달하였다. 덤핑조사대상 상품 중 특히 화학공업, 제련 및 철강과 관련된 산업은 연속 2-3차례의 덤핑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반덤핑조사를 받은 중국 기업들은 반덤핑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경제적 원인으로 이와 같은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조사대상 약 50%의 중국기업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결국 80%가 패소하였다.

중국 상품이 외국에서 집중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 당하고 외국상품이 중국시장에서 덤핑 판매됨에 따라 중국 국내 산업에 대한 위기를 불러일으키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련이 요구되었다.

한국과 중국 상품의 무역액은 계속 늘어나면서 중국기업들이 WTO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함으로써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기업은 반덤핑인식을 많이 강화해야하고 중국기업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WTO분쟁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반덤핑 전문 인원을 양성시켜야 한다.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국은 2002년부터 中國廈門, 중국자동차공회, 深圳에서 중국반덤핑컨설팅 및 인재양성센터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중국국내 반덤핑사건의 변호사는 대부분 北京시 출신이다. 그러나 北京시내 국내기업을 대표하여 반덤핑사건을 처리한 변호사는 10명

72) 中国国家标准咨询服务网 WTO.TBT 国际商报 2007.6.28

밖에 없었다. 게다가 외자기업을 대표한 변호사를 모두 합쳐도 35명이 넘지 못한 사정이다.⁷³⁾ 중국이 WTO가입함으로써 전문 인재 양성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빠른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II. 분쟁의 해결

1. 무역장벽의 철폐

한·중 무역분쟁 원인의 대부분은 한국이 무역보호주의를 실현한데 있는데 유독 중국의 제품에 대하여 차별성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각종 무역장벽을 폐지시켜야 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 두 나라지간의 각종 무역장벽은 대폭 감소되었다. 중국이 23가지 종류에 대한 수입허가증제도 및 수입제한제도 등 비관세장벽은 오랜 시간동안 두 나라가 주요하게 분쟁하는 문제가 되었다. 그 후 두 나라는 협상을 거쳐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 2-7년 안에 점차 폐지하기로 하였다. 한·중 두 나라 정부는 부단한 협상과 노력을 진행하여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장벽을 폐지하여야 하며 국제관계에 따라 습관상의 장벽조치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옹당 “평등호혜 공동번영”의 목표를 준칙으로 자국의 무역을 협력발전 시켜야 한다.⁷⁴⁾

둘째, 쌍무협상을 강화하여야 한다. 무역 교역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 수단으로서 통상 협상·조정·중재·소송 등의 4가지가 활용되

73) 潘燕梅, 한·중 무역과 무역정책 및 통상마찰, 成均館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6, P.82

74) 김진, 한·중 무역관계에 관한연구 -중국 무역정책 시사점으로, 배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69

고 있다.

중국 상무부 박희래 부장은 베이징에서 협상은 무역마찰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안 이라고 주장 했다.⁷⁵⁾ 중국 투자에서 기업들은 제도적인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협상이나 조정 또는 제3자를 통한 해결 방식을 통하여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초보적인 접근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재는 적은 비용으로 비공개적으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외국에서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재는 훌륭한 분쟁해결 수단이 된다. 한국 대중국 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는 특히 중재의 효용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몇 가지 사항만 유의하면 가장 바람직한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역 분쟁의 경우에는 중재가 매우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된다.

중국의 중재기구는 섭외중재기구와 국내중재기구로 나누어져 있고, 섭외중재기구의 경우에는 오랜 경험과 다수의 외국 중재인들이 있어 중재판정 자체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내의 한국인 투자기업들은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 후 사업 활동 과정에서 야기된 분쟁은 지리적인 원인 또는 중재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섭외중재기구를 통하여 중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한국은 중국의 수출상품들에 대해 차별할 것이 아니라 중국 상품이 한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편리한 조건과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대해야 한다.

2. WTO를 통한 무역분쟁 해결

한·중 양국의 무역협력이 재빨리 확대됨에 따라 관련되는 상품수량도

75) 중국 전인대 연례별회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희래 부장은,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상업 활동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 일부 무역동반자 특히 유럽과 미국 사이의 무역마찰이 다소 증가 했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유럽과 미국 그리고 기타 주요 무역동반자들은 중국과 무역마찰이 발생할 때 역시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바라며 중국 측은 이런 태도를 높이 평가 한다고 표명 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 자동차 완성차와 부속품 수입규정 문제에서 해당측은 무역마찰을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서 중국 측은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2006.1.12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무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개별상품들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정상적인 현상에 속하는데 관건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로부터 한·중 두 나라는 모두 세계무역기구의 정식 회원국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WTO를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체제의 목적은 “분쟁을 위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관련된 정부들과의 쌍무협상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제일 첫 단계는 쌍무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만약 협상이 실패로 끝났으면 양국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이 단계의 사건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기구에 보내지게 된다. 세계무역기구의 정식회원으로서 한·중 두 나라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양국의 우호 협상을 통하여 서로 양보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처리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수출지도와 출혈수출 방지

한·중 쌍무무역 협력을 한층 건강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국 정부와 기업은 공동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감소하여야 한다. 또한 양국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무역 분쟁을 감소시켜야 한다.

첫째, 수출기업에 전국 관념과 국가 전체 이익의 관념을 수립시킬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자각적으로 수출 질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둘째, 수출상품의 구조를 완벽하게 해야 하며 수출상품시장의 다원화 전략을 재빨리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가격관리를 실시하여 기업의 악성경쟁을 피면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수출목표를 완성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해 압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상황은 비록 많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고 기업도 적극적으로 관념을 변화시켜 경제지역역화를 적용하는데 힘써야 한다.

4. 무역협력체제 강화

첫째, 무역협력 체제를 건립하여야 한다. 양국의 정부기관은 용당 무역과 관련된 법률법규와 시행절차에 대해 충분히 교류하고 경제범죄에 관한 민, 형사적 사법처리에 대해 유효 적으로 처리할 공통의 협조체제를 확립하여야 하며 관련된 정자정보를 건립하여 정보의 공유와 조회에 편리를 갖다 주어야 한다.

둘째, 정규적인 무역관례를 건립하여야 한다. 무역왕래의 도덕성과 정규적인 무역관례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의존성을 저해하는 관례들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⁷⁶⁾

5. 능동적인 문제해결능력 확보와 마케팅 전개

한국이 대중국 무역흑자는 대세계 무역흑자의 3%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중국 무역특화지수도 0.1%에 불과하여 중국과의 교역 면에서 경쟁력은 높은 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경쟁에 대응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부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한·중 분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통해 상대국내 자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능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원가절감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소득층을 표적시장으로 설정하여 고가, 고기능의 제품 위주의 마케팅을 전개 할 필요가 있다.

6. 감정적인 인식 개선

첫째, 사고방식을 바꿔야한다. 오늘날 기업들 중에는 국내에서 모든

76) 김진, 한·중 무역관계에 관한연구 -중국 무역정책 시사점으로, 배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71-73

원자재나 부품 및 중간재 그리고 기술과 노동력을 조달하고, 국내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고, 국내기업만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한국기업이나 중국기업이나 기업 국제화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무역거래에 개입할 경우 기업 이익과 국가 이익과 소비자(인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만 소비자, 기업, 국가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법칙을 따라온 이상 한국의 "마늘 사건"중에 因小失大(인소실대)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사고방식을 특히 기업의 경영층과 정부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둘째,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 한·중 수교 이래 상호간 인지가 많이 넓어졌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예를 들면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한·중 지리적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 한국 사람은 西藏自治區(티베트)가 중국 영토인지 모르며 중국에서는 "38선"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 또 KBS방송국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제일 자주 하는 질문은 "중국에 바나나 있어요?" "중국에서 엘리베이터 타본 적이 있어요?"라는 것이고,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에게 "한국은 아직도 남자가 식사한 후에 여자가 남은 밥을 먹나요?"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한·중 교류문제가 한·중 무역 교역 중에서 가장 큰 장벽이 된다고 여겨진다.

III. 한·중 무역의 발전 방향

한·중 경제무역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한국의 제3대 무역 협력 국가가 되었다. 중국도 연속 4년간 한국의 가장 큰 무역 교역국 및 수출시장이며 2007년에는 제일 큰 수입시장으로 되었다. 2002년부터 시작하여 중국은 한국기업들의 가장 큰 투자 대상국 이었으며, 2008년 상반기 두 나라의 무역금액은 871.98억 달러, 2010년에는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중 두 나라는

FTA체결에 전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FTA 체결 후 두 나라의 무역관계는 진일보로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1. 한·중 무역량이 급속한 증가

한중 경제무역협약이 신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7년 이래 연평균 25.2%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중국대외무역 연평균 24.7%의 수준보다 더 높으며 한국의 대외무역 연평균 13.6%보다 높은 것이고, 같은 시기 중국과 주요 유럽국가(25.3%), 미국(21.9%), 일본(13.6%)의 연평균 증가 수준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2007년 한중 무역은 역사 이래 최고를 달성했으며 한중 무역발전은 중·일 무역과 중·미 무역의 발전 속도보다 빠르다. 1992년 외교관계 수교 후 무역금액은 50억 달러밖에 안됐으나, 15년간의 노력을 거쳐 2007년에는 1600억 달러에 도달했다. 중·일 무역은 1978년에 50억 달러 26년간의 시간을 거쳐 2004년에 1600억 달러밖에 이르렀으며, 중·미 무역은 1980년에 50억 달러로부터 24년간의 시간을 거쳐 1600억 달러에 이르렀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주요 경제무역파트너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중 무역은 한국과 미국, 일본 무역의 총 합계액에 달한다. 예를 들어 2007년 한·일 무역 금액은 826억 달러, 한·미 무역 금액은 830억 달러 양자의 총합이 1656억 달러는 2007년 중·한 무역 금액과 비슷하다.

한중 두 나라 경제무역협약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우선 두 나라 경제규모가 고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7년 동안 중국경제가 연평균 10.1%, 한국경제연평균 4.7%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쾌속적인 증가는 한·중 두 나라 각자의 수출에 풍부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상호 넓은 수입시장을 조성했다. 다음은 두 나라 지도자의 빈번한 왕래이며 두 나라 사람들의 왕래도 빈번하여 두 나라 관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했다. 한국이 중국의 시장경제를 인정하고 한·중 두 나라가 연구하여 체결하는 FTA관계도 쌍방의 경제무역발전에 양호한 외부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은 비교적 중국투자에 있어 높은 수준에 있으며 한국제품과 관련된 부품을 중국에 수출을 하는 동시에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

시 국내시장에 판매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수출을 촉진했다. 중국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7년 이래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23%로 증가했으며 또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에 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일 큰 수출시장으로 되었으며 2007년에는 제일 큰 수입시장으로 되었다.

2.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 강화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주요제품은 전기 음향설비 및 부속품, 방직 원료 및 제품, 금속 및 제품, 식물 제품과 화공제품 등 몇 가지 유형의 상품이다. 2007년에 상술한 유형의 상품 수출이 한국에 수출한 총액의 81.1%를 차지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26.8% 증가했고 2007년 중국이 한국에 수출을 촉진하는 주요 항목으로 되었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은 전기음향설비 및 부속품, 화공 및 관련 제품, 금속 및 관련 제품,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광산품, 광학 의료기 등 6대유형상품의 수입이 한국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의 92.2%에서 2007년의 93.3%로 증가하였다. 이는 두 나라의 수출입상품무역의 구조를 과거의 원재료 형태로부터 제품 완성품으로 진행되었고, 저부가치로부터 고부가 가치의 방향으로 발전하여 두 나라 경제 무역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3.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 투자의 증가

2001년 이래 한국기업이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수준은 비교적 높아졌다. 2004년 중국투자금액이 62.5억 달러이며, 같은 해 다른 국가에 비해 제일 높다. 2007년 한국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36.8억 달러이며 이미 일본을 초과하여 중국에 대한 투자금액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었다.

현재 한국이 중국에 설립한 기업이 4만개 정도이며 실제금액은 380억 달러에 해당 되어 일본, 미국다음으로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다.

4. 한국기업의 철수문제에 대한 방안

최근 한국기업의 불법적인 철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청도구역투자기업의 불법적인 철수현황> 보고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 총8344개의 한국기업이 청도에 투자하였으며 206개의 기업이 불법적으로 철수하였다고 발표되었다. 2003년에 처음 21개의 기업이 불법적으로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후 매년마다 불법적으로 철수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2007년에는 87여개의 기업이 불법적으로 철수했다.

불법적으로 철수하는 기업은 노동 밀집형 기업이 제일 많으며 중소기업, 즉 50명이하의 기업이 55.3%를 차지하며 이런 추세는 한·중 두 나라가 우려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조사연구와 교류를 통해 상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후 같은 정황이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두 나라의 경제무역협조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지역경제 일체화의 발전추세에 적용하기 위하여 한·중 두 나라는 모두 주요경제무역 파트너와 FTA 혹은 EPA의 체결을 가속화하며 한·중 FTA의 체결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7년 말 중국은 이미 FTA체결하였거나 협상중인 국가가 12개국에 달한다.

몇 년 이래 한국은 경제무역의 빠른 발전을 위하여 다른 주요 경제무역파트너와의 FTA관계 체결을 제의하였으며 이미 체결하였거나 협상중인 나라는 10개 국가에 달한다.

5. FTA를 위한 한·중 우호적 관계 정립

1992년에 한·중 두 나라가 외교관계를 건립했으며 1998년 21세기의 협력 파트너관계를 건립했고 2003년 연합성명에 서명하여 중한 전면적인 협력파트너 관계를 건립했으며 두 나라 정부는 많은 경제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11월 한중 두 나라 지도자가 FTA타당성 민간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중·한 FTA가 중국의 GDP의 0.50%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이익이 46억 달러 증가하며 한국의 GDP의 6%를 성장을 촉진하며 경제 이익이 약285억 달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중국은 농산물, 어업, 의류 등 영역 내에서 우위를 갖고 있으며 한국은 석화, 철강, 자동차, 기계설비와 정밀의료기계의 영역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

한국은 한·중FTA체결이 한국의 GDP성장에 대한 성장률이 3%달하며 비록 한미FTA 6%의 성장률에 비해 낮지만 한국과 유럽, 한국과 일본의 FTA가 한국의 GDP성장에 대한 성장률보다 높다고 본다. 쌍방의 연구에서 표명하기를 중한 FTA체결은 두 나라에 서로 이익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2007년 3월부터 두 나라 FTA는 공동 연구단계에 들어섰으며 4차례의 회의를 함으로써 2008년 2월에 연구가 끝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2월 제4차 회의 이후 한국외교통상부에서는 공동연구는 FTA 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공동연구결과와 여론 모집하는 과정 중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한·중FTA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중국 상품에서 특히 수산물, 농산물이 한국시장에 진입하여 충격을 줄 것을 우려한다. 그 외에 미국 요인의 영향도 있다고 전하는데, 미국이 이미 한국에 대해 표명하기로, 한국이 생산과 물류 등 영역 내에서 이미 중국경제망에 편입됐으며, 만약 중한경제관계가 지나치게 밀접할 경우 두 나라의 정치적인 친밀을 초래하여 미국의 이익에 손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한·중 두 나라가 FTA체결 후 중국에서 동아시아 경제 합작을 주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대통령 이명박은 대선거전의 인도방문에서 말하기를 한국은 웅당 우선 인도와 FTA협의를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이는 한·중 FTA관계가 언제 체결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모르는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과의 FTA관계건립은 중국 또한 많은 사람이 한국의 강철, 석유화공, 자동차부속품등 화공산품이 중국시장에 진입하여 충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중 두 나라의 FTA체결은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고 경제무역합작을 확대하는 것이지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한중 두 나라의 자유무역지역 건립 후 무역창조효과와 무역 전이효과가 실현됨에 따라 두 나라의 우호관계와 경제

무역협작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⁷⁷⁾



77) 中國駐釜山總領館經商室网站報告書
劉昌黎<<論中韓FTA>>東北財經大學 2008.3.20

제5장 결 론

한·중 양국의 경제교류관계는 1992년 공식적인 수교 이후 15년의 짧은 기간 동안 교역이 이루어졌다. 중국은 현재 경제력으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에 들어서 중국, 대만, 홍콩, 마코를 포괄하는 중화경제권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양국의 경제교류관계는 아직 안정적인 궤도에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현재 양국간 무역에 있어서 고의적인 통관지연, 대금결제지연, 클레임과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등 무역분쟁의 주요 요인 때문에 무역 불균형이 많이 발생한다. 양국간 교역관계의 확대를 통해서 균형 상태로 점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양국은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필요한 것이다. 그 출발점은 바로 계약체결 시부터 분쟁발생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은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며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또한 분쟁이 발생시에는 양국의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여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발생되어진 분쟁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무역분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할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장벽을 철폐와 쌍무협상을 강화해야 한다. 한·중 무역분쟁 원인의 대부분은 한국이 무역보호주의를 실현한데 있는데 유독 중국의 제품에 대하여 차별성 정책을 실시하였다.

둘째, WTO를 통한 무역분쟁 해결이 필요하다. 한·중 양국의 무역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되는 상품수량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무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개별상품들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때 WTO를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셋째, 수출지도와 출혈수출 방지가 요구한다. 한·중 쌍무무역 협력을 한층 건강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국 정부와 기업은 공동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감소하여야 한다. 또한 양국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무역 분쟁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수출지도와 출혈수출 방지를 해야한다.

넷째, 무역협력체제 강화가 중요하다. 우선 양국의 정부기관은 옹당 무역협력 체제를 건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규적인 무역관례를 건립하여야 한다. 무역왕래의 도덕성과 정규적인 무역관례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의존성을 저해하는 관례들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다섯 번째, 능동적인 문제해결능력 확보한·중 분업구조가 필요하다. 한·중 양국 무역균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부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한·중 분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통해 상대국내 자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능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원가절감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소득층을 표적시장으로 설정하여 고가, 고기능의 제품 위주의 마케팅을 전개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한·중무역에 있어서 사고방식을 바꿔야한다. 기업 글로벌화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기업이나 중국기업이나 기업 국제화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사고방식을 특히 기업의 경영층과 정부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또한 한·중간의 여러 가지 교류가 필요하다.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리적 환경, 인문 환경, 경제 환경 등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한·중 무역 교역 중에서 가장 큰 장벽을 철폐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I. 한국 문헌

- 1) “貿易商務研究” 第31卷 (2006.8) 第4篇 電子貿易 및 기타
- 2) 하현수, 윤충원, 유찬확 “중국의 국제무역제도 운영에 관한연구” 관세학회지(제8권 제3호)
- 3) 이재득, “중국과 한국의 제품별 산업내무역, 비교우위 및 무역수지기여도 분석”, 東北亞經濟研究 第19卷 第2号 韓國東北亞經濟學會, 2007, 143-178
- 4) 리현숙, “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및 거래분쟁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5) 王利梅 “韓·中農産物貿易과 通商摩擦” 2006.2
- 6) 김경화, “중국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7) 김선임, “한중무역의 전개와 현황”, 2005
- 8) 이혁우, “한·중 마늘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2
- 9) 김진, “한중 무역관계에 관한 연구 -중국무역정책 시사점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0) 초천자, “한중FTA산업별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成均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1) 임창환, “韓國 輸出送狀通貨의 決定要因에 관한 實證的 研究”, 배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2) 趙秀蘭, “韓·中 貿易構造에 關한 研究”, 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3) 왕치연, “韓·中FTA의 必要성과 推進 展望” 2008
- 14) 나승희, “韓·中 貿易分爭事例 研究 -마늘과동사례를 중심으로-”, 승실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5) 정운수, “韓·中 貿易分爭에 關한 研究”, 계명대학교국제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12

16) 곽화빙, “한·중 대외무역법의 비교연구”, 2008

17) 윤동일, “중국의 WTO가입 이후 한·중 무역발전방안”,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3

18) 최정은, “중국의 對韓 반덤핑 반덤핑조치 운용 연구 -1997년-2005년 반덤핑 사례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9) 박미영, “한·중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0) 潘燕梅, “韓·中 貿易과 投資政策 및 通商摩擦”, 成均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1) 金泳錫, “한국기업의 무역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률적용 불완전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2) 이춘삼, 김만길, 이재영, “최신 대외무역법” 우용출판사 2006

23) “알기쉬운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서울 특허청 1999

24) “急速히 커지는 對中國 貿易依存度”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

25) 서울경제신문 2005.4.19

26) 헤럴드경제 2002.11.8

27) 조선일보 2005.7.30

28) 한국 대외무역법

29)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은행 2008.11.21

http://www.bok.or.kr/down.search?file_path=/attach/kor/537/2008/11/1227149038685.hwp&file_name=josa200829_hwp

30) <http://www.kita.net>

31) <http://blog.naver.com/ankey?redirect=log&logNO=47469958>

32) <http://www.cnarb.com>

33) www.naver.com

34) www.daum.net

II. 중국 문헌

- 1) 每日經濟新聞 2007.12.28
- 2) 江城日報 1999.10.1
- 3) 中國化工報, 2005.5.12
- 4) “中韓雙邊貿易 存在問題及其對策” <http://www.baidu.com>
- 5) 中國商務部對原產于加拿大, 韓國, 美國的進口新聞紙所適用的反傾銷措施進行調查的報告, 商務部, 2003
- 6) 中國對原產于韓國, 日本, 美國, 芬蘭的銅板紙進行的反傾銷立案調查報告, 對外經濟貿易合作部, 2002
- 7) 中國商務部對原產日本, 俄羅斯, 新加坡, 韓國的雙酚A立案報告,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4.5.12
- 8) 對原產于美國韓國荷蘭的進口三元乙丙橡膠進行反傾銷立案調查報告,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4年第42號
- 9) 我國對進口冷軋板卷中止執行反傾銷措施的復審裁定的公告,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4年第53號
- 10) 對原產于美國, 日本, 韓國的進口非色散位移單模光纖進行反傾銷調查報告, 商務部, 2004年第28號
- 11)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
- 12) 跟单信用证统一慣例500版
- 13) 商務部 <http://finance.sina.com.cn/g/200700116/11593250748>.
2007.1.16
- 14) 人民網 <<중·한 공동성명>>(中韓聯合公報) 2005.
- 15) 人民網 世界財經 2005.11.24
- 16) 新浪 財經縱橫 國內財經 2007.1.16
- 17) 環商數據 <http://www.worldbgdate.com> 2008.8.5
- 18) 중국 대외무역법
- 19) 중국 반덤핑조례
- 20) www.google
- 16) www.baidu.com
- 17) www.sina.com,
- 18) <http://www.cnarb.com>

19) www.yahoo.com



중문초록

關於韓中貿易紛爭解決方案的研究

金海英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本論文通過分析韓中兩國的貿易現狀.發展及問題來重點分析了兩國貿易間發生的貿易摩擦,并進一步分析了對於問題的解決方法,在21世紀如何解決這些新問題是重新確立兩國經濟關係的關鍵,并且通過經濟上的交流,促進兩國政治外交關係的發展.

自20世紀70年代中國的對外開放政策實施以來,韓.中兩國貿易組織通過香港.新加坡.日本等國進行間接貿易,1989年止,兩國の間接貿易就達到了一定規模.由于韓.中兩國在經濟上有很大的互補性,在兩國政府不斷交流的基礎上,1992年8月26日韓.中兩國正式建立了友好關係.

韓國和中國自建交以來,兩國間的貿易迅猛發展,到2007年為止,韓國成爲中國的第五大貿易伙伴,并且韓國成爲中國的最大投資國家,中國對韓國的境外投資也不斷增長.

但是,自從1992年建交以來,中國不斷地吸收外國資本和先進技術,中國的經濟迅猛發展,國內企業的技術實力也有了一定的積累,韓.中兩國貿易數量逐年增加的同時貿易結構也在發生變化,與此同時,相互間的糾紛也在不斷增多.特別是2000年韓.中兩國的大蒜風波,如何解決兩國的通商摩擦是21世紀兩國政府面臨的難題.

爲了兩國間不斷增加的貿易糾紛得到解決,無論是政府.企業,還是个人在通商摩擦中的作用也不可忽視,都要爲此付出努力.首先,要增進兩國間的交流認識,通過文化,經濟等各个方面的交流,以利于促進兩國間相互了解,免除不必要的摩擦,使兩國的貿易通商效率得以提高.其次,要協調好每个个体之間的關係.

个体間問題的解決是貿易通商的重要環節,只有解決了个体間的摩擦,才能保障通商的正常進行.

通過上述分析,韓.中兩國應在平等互惠的基礎上不斷探索新的韓.中經濟關係.

最后,我个人反對任何國家採取報復行為解決貿易摩擦中出現的問題,提倡通過協商達到一致的目的.



한글초록

한·중 무역분쟁 사례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김해영

제주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이 논문은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에 대한 현황과 무역분쟁 사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무역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한다. 21세기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양국 간의 경제관계를 재설정하기위해서 중요하고 그리고 경제소통은 정치적 외교적 관계를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197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후로 홍콩이나 일본 싱가포르를 통한 간접무역방식에서 1989년에 이르러 양국 간의 간접무역을 상당한 규모로 확대하게 되었다. 양국 간의 경제는 다소 상호 보완적이다 그리고 양국 정부간의 교환을 토대로 양국은 1992년8월 외교관계를 세웠다. 외교관계를 새롭게 맺음으로써 양국사이의 무역은 급속도로 발전되기 시작했고 한국은 중국의 5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중국에 투자하는 가장 큰 나라가 되었고 반면에 중국도 한국 투자 또한 증가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1992년에 외교관계수립을 통해서 중국은 외국자본과 발전된 기술의 도입하게 됨으로서 중국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그리고 중국내경영의 기술적인 힘을 어느 정도 축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양국사이의무역량은 해마다 크게 증가되었고 그리고 무역구조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똑같이 2000년 마늘분쟁과 같은 양국사이의 무역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양

국간의 무역마찰을 해결하는 것이 21세기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도전이다. 정부, 사업, 개인 간의 역할은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더 많은 노력이 양국사이의 증가하는 무역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우선 양국사이의 이해 교환에 대한 증진이 필요하다. 문화, 경제 그리고 다른 교류는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양국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할 수 있으며 통상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둘째로 국민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개인 간의 이슈는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면 무역 분쟁 중 개인 관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Abstract

A Study on Trade disputes Case and Settl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i-ying ji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trade disput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rough analysis of South Korea and China's trade situation, development and problems, and then do further analysis of the solution to these problems.

In the 21st century, how to solve these problems is the key point to re-establish the two country's economic relationship. And economic communications will promote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greatly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the 1970s China's Reform and Opening, there had been indirect trades through Hong Kong, Singapore, Japan between Korea and China. By 1989, indirect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reached a certain scale.

For economics between two countries are rather complementary and on the basis of the two governments' constant exchange, South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on 26th, August, 1992.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the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developing swiftly. By 2007, Korea has become China's fifth largest trading partner and the largest country that made investment in China while China in South Korea's overseas investment is also growing.

How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China has been continuing to introduced foreign capital and advanced technology, and China's economic develops with amazing speed, and technical strength of domestic enterprises have accumulated a certain degree.

As a result, the amount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increased clearly year by year and the trade structure is also changing, at the same time the trade disputes between each other are growing, for sample, the garlic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2000.

So how to solve the trade fri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the first challenge faced by the two governments in the 21st century. The role of government, enterprises or individuals should not be ignored and more efforts should be paid in order to resolve the increasing trade disputes between two countrie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exchange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Culture, economic

and other exchanges can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remove unnecessary fri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trade efficiency can be improve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individual. The resolution of individual issues is an important part of trade and a prerequisite to guarantee the normal development of trade.

Through the analysis above, South Korea and China two countries should explore a new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hip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mutual benefit.

Finally, I personally oppose any country to take retaliatory actions to resolve trade friction problems and consensus through negotiation should be advocated.

